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2차 피해

- 안희정 전 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

일시 : 2018. 07. 26(목). 오전10시

장소 : 창비 서교빌딩 지하2층(망원역 근처)

주관 :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언론시민연합

주최 :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350개 단체)

'학교 사건대응을 위한 학생연대', (사)강원더불어아웃,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사)대전여민회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여성과 나눔, (사)여성이 만드는 세상,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부산지부, 3.8 대학생공동행동, KYC (한국청년연합), 강릉여성의전화, 강서양친민중의집 사람과공간, 강화여성의전화, 거제여성회, 경기권 대표,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한부모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아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남여성회 (부설 남산평생교육센터, 내동평생교육센터,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경산여성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주여성노동자회, 계명대학교 여성학과 총동문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인내, 쉼터푸른봄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 광주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구로삼타지역자활센터,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구로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군산여성전화, 군인권센터, 군포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한부모사업팀, 기독교여민회,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나눔문화, 나쁜페미니스트, 남부여성발전센터,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녹색연합,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연대회의,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구북부여성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보호작업장,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대구여성회 (부설 노동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 '라온' 평생교육원,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 해물 자립생활센터),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학자협의회, 대전평화여성회, 대학생페미니즘 동아리 네트워크,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더신나는여성정치, 동두천새울터,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마산여성회 (부설 셋별지역아동센터, 성폭력상담소, 여성인권상담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목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동당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성매매피해지원상담사이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부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부산북구지역자활센터,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설 늘함께청소년문화센터),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사단법인 갈등해결과 대화, 새울터, 서울강서양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부설 쉼터), 서울한부모회, 성군관대 여성주의 소모임 나온,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소우주성문화인권센터, 수원가족지원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부설 팔달희망지역아동센터, 평동어린이집),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연대회의, 시흥여성의전화, 실천여성회'판', 심대여성인권센터,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여성긴급전화1366 전국협의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여성인권티움,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여성환경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남구지부, 동구지부, 북구지부, 울주군지부, 중구지부, 고용평등센터, 북구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아동센터-누리나무, 밝은세상, 어깨동무, 자람터, 징검다리, 천국자람터, 푸른솔, 햇살), 울산한부모 가족지원센터, 원주여성민우회, 월담, 익산여성의전화, 인권운동연대, 인권정책연구소, 인권중심 사람, 인권의망센터'강강술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미투성폭력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방 송작가지부영남지회,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경남지부, 고용노동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구경북, 대전충청지부, 서울지부, 울산지부, 인천지부, 인천지부, 전북지부), 전국여성법무사회, 전국여성연대,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 무지개 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등불아학),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부설 쉼터), 전주시직장맘고충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남, 쉼터 불턱/자활지원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녹지',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짙는페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 남부, 동북부, 서부, 경기지부, 고양, 김포, 성남, 수원, 안양, 의왕, 의정부, 파주, 경남지부, 거제, 거창, 김해, 마창진, 진주, 경북지부, 경주, 구미, 상주, 포항, 전남지부, 광양, 나주, 목포, 영암, 화순, 전북지부, 김제, 전주, 정읍, 충남지부, 서산태안, 천안, 홍성,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이천), 참여연대,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청주여성의전화,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여성회, 충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다올교육문화센터, 돌봄, 일터,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탁틴내일, 통영여성장애인연대(부설 종합지원센터), 페.거.리, 페미당당, 페이머즈, 평권프로젝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택새울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평화인권교육센터, 포항여성회(부설 바다솔지역아동센터, 경북여성통합상담소), 풀뿌리여성'마을숲',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 연합회 (부설 성평등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쉼터 열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여성법리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성리학회 산하 여성주의상담연구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학자협의회(부설 기독교여성상담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각장애여성회, 한국청소년문화센터협의회,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환경정의, 흥사단, 흰 : 경희대 국문과 페미니즘 소모임

순 서

사회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교수)	
발제 1	안희정 성폭력사건의 경과와 쟁점 3 배복주(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장애여성공감 대표)
발제 2	미디어 보도 윤리와 2차 피해 13 김수아(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발제 3	‘국민 알권리’ 빙자해 ‘피해자 인권침해’하는 안희정 성폭력 공판 보도 20 김언경(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발제 4	업무상 위력 간음에서의 ‘위력’ 해석 31 장임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제 5	이것이 성폭력이 아니라면 무엇이 성폭력인가? 37 권김현영(여성주의 연구 활동가)
휴 식	
종 합 토 론	

안희정 성폭력사건의 경과와 쟁점

배복주(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장애여성공감 대표)

1. 활동경과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 130개소)와 피해자 변호인단(현재4명)으로 구성되어 2018년 3월 5일부터 수사재판지원, 언론대응, 피해자 및 주변인 지원을 하고 있다.

공대위는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경험을 세상에 알린 이후부터 전체 과정을 함께하고 있다. 4개월간의 활동기록을 통해 함께 논의하고 고민했던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 경과 >

- 2018.03.05. 피해자는 jtbc뉴스룸 생방송 출연. 안희정 지사에 의한 성폭력 피해사실 알림
- 2018.03.06. **공대위 1차 성명발표**_'성폭력가해자 안희정은 사회적·법적 책임을 져라!'
2차피해 제보 신고메일 계정 및 트윗 계정신설
서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 2018.03.08. **공대위 2차 성명발표**_피해자 지원에 대한 언론 브리핑 자료 배포(2차피해 관련)
※ 피해자 지지그룹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 1차 성명서 발표
- 2018.03.09. 서부지검 피해자 1차 진술
공대위, 안희정 전 지사 일방적 자진 출석 규탄
- 2018.03.12. 피해자 자필 심경글 언론배포(2차피해 관련)
- 2018.03.13. **공대위 3차 성명발표**_국회앞 기자회견_'위력에 의한 성폭력, 정치권력 중단하라!'
※ 피해자 지지그룹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 2차 성명서 발표
- 2018.03.16. 2차 피해 고발장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2018.03.17. 서부지검 피해자 2차 진술
- 2018.03.21. 2차 피해 고발인 조사(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2018.03.25. ※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 안희정 관련 다른 피해(2명) 내용발표, 언론기사화
- 2018.03.28. **공대위 4차 성명발표**_구속기소 촉구 성명
- 2018.03.28. 구속영장실질심사 안희정 영장기각
- 2018.03.29. 서부지검 피해자 3차 진술
- 2018.04.02. 구속영장 재청구 안희정 영장기각
- 2018.04.11. 검찰에서 안희정 기소
공대위 5차 성명 발표_검찰에 기소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

- 2018.04.18. 2차 피해 현황 보고/ 국회 및 언론사 배포
- 2018.04.19. 남인순 국회의원실_2차피해 촉구 성명서 발표(의원 페이스북)
- 2018.04.21. ※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 미투시민행동집회 발언 및 피해자 지지편지쓰기
- 2018.05.09. 공대위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 2018.05.18. 2차 피해 추가 고발장 접수(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2018.05.29. 공대위 법률전문가 간담회(비공개)
- 2018.06.01. 2차 피해 추가고발장 관련 고발인 조사(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2018.06.15. 안희정 성폭력사건 1차 준비기일
- 2018.06.22. 안희정 성폭력사건 2차 준비기일
- 2018.06.25. 공대위 학자 및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 2018.06.28. 공대위 [위력에 의한 성폭력 경험/사례제보] 구글 제보 오픈(계속)
- 2018.07.02. 공대위 서부지법앞 기자회견 _위력을 인지할 때, 위력은 제지된다!
_#미투 안희정 성폭력사건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 2018.07.02. 1회 공판(공소사실, 증거조사, 입증계획, 공개), 방청연대 및 피켓팅
- 2018.07.06. 2회 공판(피해자 출석, 비공개), 방청연대(피해자에게 지지편지쓰기) 및 피켓팅
- 2018.07.09. 3회 공판(검찰측 증인신문, 일부비공개), 방청연대 및 피켓팅
- 2018.07.11. 4회 공판(피고인측 증인신문, 공개), 방청연대 및 피켓팅,
피고인측 변호사, 검찰측 증인 구○○ 모해위증으로 고소장 접수(서부지검)
공대위 6차 성명 발표_‘피해자측 증인 모해위증 고소에 대한 입장발표’
- 2018.07.12. **공대위 7차 성명 발표_‘안희정 성폭력사건 도넘은 보도리스트 공개’**
공대위 8차 성명 발표_어떤 피해자가 이 길을 가겠는가?
- 2018.07.13. 5회 공판(피고인측 증인신문, 공개), 방청연대 및 피켓팅
**공대위 9차 성명 발표_“안희정 이미지 메이킹’ 경력으로 ‘김지은 이미지 메이킹’
에 나선 7명의 안희정 측근 증인들’**
- 2018.07.16. 6회 공판(감정증인 출석 등, 비공개), 피켓팅
- 2018.07.20. 공대위 [위력에 의한 성폭력 - 제대로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연서명(~7/30)

< 공대위 회의 >

2018.03.07. 1차 회의, 2018.03.09. 2차 회의, 2018.03.11. 3차 회의, 2018.03.16. 4차 회의,
2018.03.17. 5차 회의, 2018.03.19. 6차 회의, 2018.03.21. 7차 회의, 2018.03.24. 8차 회의,
2018.03.30. 9차 회의, 2018.04.02. 10차 회의, 2018.04.04. 11차 회의, 2018.04.07. 12차 회의,
2018.04.11. 13차 회의, 2018.04.16. 14차 회의, 2018.04.24. 15차 회의, 2018.05.4. 16차 회의,
2018.05.09. 17차 회의, 2018.05.21. 18차 회의, 2018.05.24. 19차 회의, 2018.05.29. 20차 회의,
2018.06.15. 21차 회의, 2018.06.25. 22차 회의, 2018.07.13. 23차 회의, 2018.07.16. 24차 회의,
2018.07.24. 25차 회의

2. 사건 쟁점에 따른 공대위의 대응활동

1) 소위 ‘찌라시’ 등장으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작

피해자가 방송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린 후(3월5일), 안희정 지사 비서실에서는 ‘합의된 성관계’라고 밝혔고 안희정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내고¹⁾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했다.

하지만 3월 6일부터 소위 ‘찌라시’가 돌기 시작했고, 그 내용은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사적인 정보로 보이는 허위사실이었다. 이는 인터넷 SNS를 통해 순식간에 유포되었고 각종 포털사이트에서는 피해자라고 날조된 사진도 게시되었다. 누군가에 의해서인지 관련 내용이 생산, 유포되는지 짐작되는 정황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내거나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안개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신상에 대한 허위정보와 조작된 사진이 나열되는 것을 보며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공대위는 JTBC보도 다음날인 3월 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2차 피해 중단요구와 2차 피해 제보를 받는 메일개설을 알리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찌라시’는 잦아들지 않았고, 피해자는 그 다음주 월요일, 2차 피해에 멈춰달라는 호소의 자필편지를 공개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으나 빠르게, 넓은 범위로 뒤덮인 ‘찌라시’와 언론기사에 달린 악의적인 댓글은 피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공대위는 메일을 통해 제보받은 내용과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하였고,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다.

2) 검찰조사 과정, 진술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사투

3월 9일 오전10시,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시작하였다. 언론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석날짜를 알리지 않고, 기자들의 눈을 피해 진입했고,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피해자 진술은 당일 오후 3시 안희정 전지사가 일방적으로 검찰에 자진출석하면서 잠시 중단되었다. 공대위는 이 상황에서 피해자 조사가 중단되어서는 안되고, 가해자의 일방적 출두가 문제이며, 피의자를 돌려보낼 것을 요구했다. 결국 자진출두한 피의자를 돌려보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과 피해자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 공존하면서, 검찰은 피해자와 피의자를 동시에 조사하게 되었다.

검찰에 출석의사를 사전에 밝히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출석하여 자신을 조사하라는 피의자 안희정의 태도는 일방적 행위이며,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는 것도, 피해자에 사과하는 태도도 아니다. 포토라인에 서자 “국민여러분들께 죄송하다”며 국민을 호명했고, 본인의 가족을 호명했다.

1)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지은씨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 오늘부로 도지사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일체의 정치활동도 중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안희정올림’ (3월6일)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위한 과정은 녹록치 않았다. 먼저 피해자의 기억과 경험이 증거가 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상세한 기억과 기억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는데 사력을 다했다. 매일 일정과 업무가 연속적이기도, 분절적이기도 했던 상황에 대해 일일이 자료를 찾아내는 것은 집중을 요하는 과정이었다. 또한 정치권, 도청, 정무업무, 비서업무, 도지사 혹은 대권주자의 위치와 위상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사전 이해가 적은 상황에서 해당 분야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가 이루어질 때까지 설명해야 했다.

더 큰 과정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대답해야 하는 것이었다. 피의자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합의된 성관계이다’라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 대부분을 부인했고 반론을 제기했다. 피의자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의자의 말이 틀렸음을 상세한 진술, 자료의 보완으로 수차례 입증해야 했다. 기소 이후 재판에서 피고인 측 증인들이 법정에서 했던 증언들,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 썼던 그 증언들(상화원 이야기 등)등 수사과정에서도 계속 질문 받았던 것이다. 피해자는 수행폰이 아닌 본인 개인폰까지 증거로 제출해서 자신의 진실성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하는 과정이다. 3월17일과 3월29일 두차례 피해자 진술은 피의자의 변명과 부인에 대해 죽을힘을 다해 노력했던 시간들이었다.

당시에, 언론에서 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결같이 답변했던 내용은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간음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유는 안희정 전 지사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수행비서에게 성적인 침해한 것이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차분하게 잘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면, 또다시 ‘위력을 이용했다는 입증은 어떻게 합니까?’ 질문이 돌아온다.

“안희정은 충남 도지사이고 유력대권 주자로서, 그 영향력이 막강했고 일상적으로 종속인 위치에 있는 수행비서인 피해자와 관계가 바로 위력이라고 생각한다. ‘간음 당시의 위력행사’가 있었는지를 보는 판례의 태도는 변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 간음 당시에만 평등한 관계로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언론에서 제대로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길 바랐다.

3) 두 번의 구속영장 기각과 검찰의 기소결정

안희정 전지사에 대한 영장이 두차례 기각되자 언론에서는 마치 안희정 전지사가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기사를 내기 시작했다. 구속사유를 다투는 영장심사에서 기각된 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다툼 여지가 있다’ ‘범죄소명 부족’ 등의 기사가 나가면서 마치 안희정 전지사의 혐의가 없는 것처럼 표현되는 것은 문제적이다.

당시 공대위에서는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성명을 발표했다. 안희정 전지사가 미안하다 모두가 나의 잘못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시인도 없고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하여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에 대한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며 언론에 흘렸지만 그 사진을 아직까지도 제출한바 없는 점. 주변참모들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주변에서 돕는 사람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한 점. 범죄시 사용하던 휴대폰은 제출조차하지 않고 다른 휴대폰을 제출한 점. 피해자가 도청에서 사용하던 수행폰도 검찰 압

수수색전에 모든 내용이 지워졌고 유심칩까지 교체한 점. 이런 사유가 바로 증거인멸우려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여겨진 이유이며, 구속이 필요한 사유였다.

결국 안희정 피의자에 대한 영장기각은 위력 행사의 지속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피해자를 음해하고 비방하는 내용이 무분별하게 지속되었고, 피해자 주변인들은 위협되었다.

검찰은 영장기각 후, 10가지의 혐의를 적시한 공소를 제기하면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공대위는 검찰의 기소는 환영하면서, 재판에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간음죄 판단에서 위력행사에 대한 처벌공백이 없도록 할 것과 불구속 상태의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발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4) 재판공개, 피고인측 증인신문 전원공개와 예견된 참사

-피해자 공판 방청 및 16시간의 법정 증인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의 해결주체로서 재판방청을 통해 사실관계 공방에 대한 재판부의 심리를 잘 경청하고자 했다. 7월 2일 1회 공판에 방청을 이후 언론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 방청을 하는 것은 이례적'라는 취지의 기사가 나오고, 댓글은 피해자답지 못하다며 피해를 의심하는 글들이 달렸다. 피해자가 공개된 자기 재판에 방청하는 것은 적극 지지, 장려되어야 할 일이다. 이례적인 일 또한 아니다. 자신을 가해한 사람이 어떤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가해자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피력할 수 있다. 단지 성폭력피해 재연되거나 기억이 재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해자 대면을 꺼릴 수 있으나, 성폭력피해자가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피해자 법정진술은 16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추행의 경위와 관련해서 피해자가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그치듯 반복해서 질문하였고, 피해자는 몸의 느낌은 남아있으나 당시 상황 중 어떤 것은 기억나고 어떤 것은 잘 기억나지 않는 자신의 상태를 자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폐막 뒤에 앉아 피해자가 증언하는 도중에 헛기침을 계속 했다. 이는 1차나 3차, 4차 공판 때 차폐막 없이 증인석에 앉아 있을 때는 하지 않던 행동이다. 피해자는 이 헛기침과 인기척 소리로 인해 증언에 집중할 수 없었다. 수행기간 동안 뭔가 불편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헛기침을 했던 안희정 지사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고, 피해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면서 피해가 재현되고, 몸이 몹시 추워지는 등 신체적인 반응을 겪게 되었다. 긴 시간 위축되고 불안한 감정이 지속되면서 법정진술이후 바로 입원을 하게 되어 이후 재판방청은 하지 못했다.

-피해자측 증인은 모해위증죄 피소

검찰측(피해자측) 증인 5명(공개2명, 비공개3명)의 증언은 일부가 공개되었고 피고인측 증인의 증언은 7명은 모두 공개되었다. 그나마 피해자측 증인으로 나온 한 사람은 피고인측에 의해 모해위증죄로 피소되었다.

피고인측은 피해자측 증인에 대해 역고소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돕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을 향해 보복하고 입막음을 했다. 이는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통제시켜 두려움을 갖게 하고 언론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본보기를 보여준, 매우 악랄한 행위이다.

-피고인측 신청하고 재판부가 채택한 7명의 증인

피고인측에서 채택한 증인 중에는 피해자가 방송에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합의된 성관계’라고 입장을 표명한 비서실장, 피해자를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을 수백개 단 후임수행비서, 또다른 피해자라고 등장한 피고인의 배우자까지 있다. 위 증인은 7명 중 4명이었는데, 이들은 증인으로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들은 피해자에 대해서 객관적, 독립적으로 증언할 수 없는 사전적 사유가 존재하는 인물이었다. 실제로 증언은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 비난, 원망이 배경이 된 자의적인 평가나 왜곡으로 이루어졌으며, 매우 부적절하였다. 특히 특수관계자인 피고인의 배우자의 증언은 그야말로 자극적일 수 밖에 없었으며, 채택을 했더라도 비공개로 진행되었어야 한다.

피고인측 증인 7명의 공개증언은, 모두 김지은을 ‘거짓말하는 사람’ ‘안희정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몰아갔다. 7월11일과 13일 양일간 피고인측 증언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어 ‘안희정의 반격’ 정리되고 피해자가 진술은 또다시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민주원의 증언은 거의 실시간 중개되듯이 기사화되었고 결과적으로 안희정의 아내인 민주원이 ‘최대 피해자’라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안희정은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이처럼 사건의 실제적인 진실을 가리게 하는 증인들에게 무분별하게 신문하는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공대위는 3일간 4차례 이상 피고인측 증언에 대해 언론사에 정정 문자를 보내고 성명을 통해 피해자 입장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 수행비서 업무를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표현한 부분, 증인들이 감정에 기반한 증언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에 피해자 비난, 책망성 심문을 삼가고, 주요 신문 목록을 사전에 제출하라고 준비기일에 이야기했으나, 실제 증인 선정에서 이는 분별되지 않았고 전원 공개로 진행된 두번의 공판 기간 동안 언론은 저열한 기사로 도배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측 공개증인 심문이 모두 끝난 금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언론사에 자제 요청 알림을 발송했다.

-도넘는 보도리스트 공개

‘김지은이 숙박업소 예약했다’라는 피고인측 증언을 그대로 언론기사의 제목으로 게재하고 그 기사내용에서 직장내 피감독자 간음,추행 사건 특히 비서 업무를 수행했던 자에 대한 간음 추행사건에서 업무수행을 마치 ‘합의한 성관계’ ‘비밀스런 관계’ ‘자발적인 관계’의 뉘앙스로 기사를 쓴 보도는 최악이고, 사건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다. 공적인 업무에 사적화 시키고 개인화시킴으로서 피해자에게 다시 책임을 묻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공대위는 이런 언론사와 기사를 공개했다.

3. 제대로 된 판결, 판례를 향하여

공대위는 20종에 달하는 전문가 의견서와 관련인 및 자발적 피해자 지지그룹 탄원서, 연서명을 제출하고 있다. 폭행과 협박을 현저한 정도로 요구하는 강간/강제추행의 ‘최협의설’에 갇힌 성폭력 인정과 판단을 넘어서기 위하여,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여성학, 사회학, 정치학, 문화인류학, 범죄심리학, 정신의학, 법학 등 다각도의 시선에서 해석하고 설명하는 의견서들이 다. 더불어 피해자의 평소 살아온 모습과, 안희정 사단에 일자리를 얻은 이후에 보였던 모습 등에 대한 지인, 동료들의 탄원서도 있으며, 위력 성폭력을 경험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피해자 지지 시민들의 자발적인 연서명도 제출된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탄원서를 전국에서 서명받고 있다.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으며 - 뜨거운 날씨에 해수욕장에서, 길거리 가판대에서 전국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원, 활동가들이 오프라인 서명을 소개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 -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전문으로 발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역사적인 판결을 촉구하며, 기대한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 -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2007도8135 판결)는 위력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즉, 위력이란 가해자가 가진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이로 인한 영향력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인가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판결에서는 이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저항 유무가 최협의 강간추행 판단에서처럼 반복적으로 질문되거나, 피해자의 미성년자, 장애여부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권세가 생계, 진로, 업무를 점유하는 환경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매우 많습니다. 지위를 권세로 알고, 위계를 권력으로 알고 이용하는 조직체계와 문화가 만연한 사회에서 피해자의 상태가 반영될 수 있는 법의 언어, 판단기준, 해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권세와 지위에 의해 제압당해 이루어지는 성폭력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극히 일부의 사람은 명시적인 저항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곧 더 큰 압력을 받을 것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이를 드러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할 것이고, 이를 알지 못하는 이도 또 다른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이 겪은 피해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 자책을 많이 하고 이는 수년, 십수년간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것이 발생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말해주는 사회적 책임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성폭력이 발생하고 용인되는 사회이며, 책임져야 할 것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감있는 사회의 응답이 없을 때 이는 피해자의 자책으로 이어집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오랫동안 가해자의 유형, 무형력(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 등에 의해 자신의 실존이 위협받은 피해자는, 법적 처벌공백에서 또 다시 좌절과, 절망, 공포 상태에서 머물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는 충남도의 도지사이자 유력대권 후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피고인 안희정의 수행비서로서, 피고인은 일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업무를 지시는 물론, 피고인의 인맥과 정보력을 파악하는 업무수행 요청, 공사구분없는 심부름, 배석 등을 지시하고 눈빛, 표정, 헛기침 하나로 본인의 상태를 알리고 케어를 받았 습니다. 그 일상적 지배력을 일거수 일투족을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배적이고 일방적인 힘의 관계가 성폭력 상황에서 갑자기 평등한 의사소통과 협의를 하는 관계로 탈바꿈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절대적인 힘의 논리에서 유독 성폭력이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갑자기 가해자에게 맞서야 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모든 생존의 문제를 걸고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불어 그 싸움을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피고인은 스스로 주장하는 ‘합의된 성관계’에 대해 어떠한 직접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피해자의 행실, 태도, 표정 등을 주장했으며, 이는 언론과 검색사이트를 점유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이미지 왜곡은 이미 피해자의 방송 인터뷰의 영향력보다 훨씬 크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피해자가 두렵다고 했던 피고인의 영향력의 행사라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와 피해자를 위해 증언하는 자를 제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전국에서 성폭력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있는 130개 성폭력상담소가 가입된 협의체입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성폭력피해자를 중에는 학교, 직장, 군대 등 조직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위력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법원의 태도는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결이 엄격하여 법정에서 좌절과 절망을 하고, 또다시 가해자로부터 역고소를 당하는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래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관련단체 및 유사한 피해를 경험한 수많은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판결이 필요합니다.

2018. 7.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및 일반 시민

미디어 보도 윤리와 2차 피해

김수아(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1. 미투 운동 보도와 미디어 보도에 의한 2차 피해

통상 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경험하는 2차 피해는 관계된 사법기관의 수사 과정이나, 가족과 친구와 같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언론 및 여론 등의 소문과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피해자가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받는 것을 말한다²⁾.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에 대한 모욕, 피해자의 신상 공개와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이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매체가 이러한 사생활 침해를 매개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통적 미디어 보도는 물론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2차 피해를 가중시킨다.

이에, 언론 보도에 있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보도 가이드라인이 있다. 2014년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만든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언론은 경쟁적인 취재나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나 가족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다. 2012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총강 5조에서도, “언론은 성범죄를 보도할 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해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윤리 기준들은,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보도해야 한다는 의미도 크지만, 피해자의 신원이 알려진 상황에서도 언론이 윤리적인 보도를 하려면 2차 피해의 문제에 대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문과 방송 미디어 보도에서부터 각종 온라인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보도를 통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2차 피해의 중요한 문제점은, 해당 성폭력 범죄사건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뿐 아니라 향후 성폭력 범죄에 대해 증언하는 이들에게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어 자신의 피해를 용감하게 증언하거나 또한 돕기 위한 조력을 위한 증언을 하는 용기를 꺾는 것에 있다.³⁾

특히 디지털 미디어가 발달한 이래, 2차 피해 양상은 그 확산 속도와 영속성에서 이전의 신문, 방송의 시대와 확연히 다르다. 피해자는 수많은 댓글을 통한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취사선택된 특정 내용이 강조된 편집 자료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유포되고 이는 삭제되지 않고 영속적으로 남는다. 현재 피해자의 재판 과정을 무책임하게 보도하는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이

2) 이미경(2013).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2차 피해의 심층구조. <여성학연구>, 23(2), 43-75.

3) 한희정(2018). 미투운동 댓글 속 2차 피해와 예방 방안.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여성가족부 주최 <언론 속의 미투> 토론회 발표자료.

보도 내용이 포털 서비스 등의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고 대중이 이에 상호작용 하면서 발생하는 2차 피해가 계속 누적되는 중이다.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2차 피해는 피고인이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가부장적 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판 과정을 활용하고 있는데 기인하는데, 이를 언론이 전혀 윤리적 판단 없이 매개한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2. 재판 보도에서의 언론 윤리

현대 사회에서 언론의 핵심적 역할 중 하나는 현실을 구성하는 것이다. 언론은 현실에 대한 내러티브화를 통해 특정 대상과 집단을 상징적으로 재현하고 있다.⁴⁾ 언론은 뉴스를 사실로 보도하면서 선택과 배제를 통해 현실을 구성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사회적 기초로 뉴스에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반영되고 배제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재판 보도에서는 무엇이 반영되고 무엇이 배제되는가가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도의 신중함이 더 요구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유용민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재판 과정에 대한 보도는 재판이 다루는 논쟁거리와 쟁점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고, 각종 주체의 발언을 매개하면서 시민들이 해당 사안에 대한 태도와 의견을 형성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언론과 사법부는 모두 담론을 생산하는 주체들이며, 언론은 해당 사건에 대한 담론을 특정하게 구조화하여 유포하는 주체이다. 언론은 여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때로는 여론을 주도하기도 하며, 법정에서 법에 따른 논의가 진행되는 한편 언론은 법원 밖에서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시키는 여론 재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⁵⁾ 이처럼 재판 보도가 사건의 의미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재판 보도가 채택하는 내러티브에 대한 관심이 중요해진다. 문제가 무엇인가,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어떤 대안이 제시되는가 등은 재판의 의미를 구성하는 언론기사 구조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⁶⁾.

이러한 맥락에서, ‘상징적 소멸’의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에 관한 보도를 할 때 언론 보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상징적 소멸” 개념은, “미디어가 특정 집단을 아예 등장시키지 않거나(omission) 사회적 기여가 없는 사소하고도 의미 없는 존재들로 묘사하고(trivialization), 부정적인 인물로 재현해 비난의 대상이 되도록 구성하는 것(condemnation)이 지적됐다.”⁷⁾

성폭력 범죄 보도와 관련하여서 피해자를 비난의 대상이 되도록 구성하여, ‘상징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언론의 보도 관행이 비판을 받는다. 통상, 사법 보도, 재판 보도 등 법조와 관련된 보도에서 문제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워서 여론 재판이 미리 일어나기 쉬우므로 피의자의 입장에도 공평한 입장을 언론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 주로 논의되었다. 예컨대, 한국의 재판 보도에서 요구되는 언론 윤리로 수사기관과 피고인 측의 주장을 대등하게 보도할 것,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 주장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할 것, 주장을 보도하는 것과 주관적 의견 피력을 구분할 것 등이 제시되었다.⁸⁾

4) Johnson-Cartee, K. S. (2005). *News narratives and news framing: constructing political reality*.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ing, Inc

5) 유용민(2017). 재판 보도에서의 법리적 쟁점 다양성. <언론정보연구>, 54(3), 133-172.

6) 유용민(2017). 헌법재판과 뉴스 프레이밍. <한국언론학보>, 61(2), 7-36.

7) 김경희, 강혜란(2016). 여성의 과소재현과 상징적 소멸. <미디어, 젠더 & 문화>, 31(3), 53-96. 58쪽.

8) 정한중(2013). 미국에서의 범죄 보도의 자유와 공정한 형사 절차. <미국 헌법연구>, 24(1), 361-398.

하지만 성폭력 사건 보도에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계속 의심을 받고, 자신의 “순수함”을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이는 성에 대한 가부장제적 이중 관념 속에, 성폭력 피해의 책임이 피해자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모함하고 있다는 의심이 바로 나타날 정도로 사회 통념상 가해자보다는 피해자를 더 의심하고 비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⁹⁾. 따라서 성폭력 사건 보도에서는 일반적인 재판 보도의 윤리보다 훨씬 더 세심하고 복합적인 판단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언론 윤리 내에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4조 1항 “(재판에 대한 부당영향 금지) 언론인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취재, 보도, 평론해서는 안 된다.”, 인권보도준칙에서 제2장 2조 가항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등의 원칙이 제시되었지만, 사안에 따른 특별한 보도 윤리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3. 재판 보도에 따른 2차 피해 가속화 문제

일차적으로 이번 보도는 형식적 객관 보도의 윤리가 준수되기 어려워 대등 보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재판에 대한 보도 기사를 낸 언론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찰 측 증언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으니 공개된 안희정 전 지사 측 증언을 그대로 옮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리고 이를 인용하여 보도하기 때문에 ‘사실’ 보도의 원칙을 따랐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검찰 측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 전 과정의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피해자 증언만 비공개하기로 한 것이어서,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보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혹은 객관 보도의 형식을 지키기 위해 일부 언론은 피해자 측 반응을 기사 끝에 덧붙여 두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대등 보도와 객관주의 윤리를 지켰다고 보기 어렵다.

언론은 이런 사건 보도에서는 관행이 아닌, 저널리즘 윤리에 기반을 둔 판단을 해야 한다. ‘언론이 일방적 주장을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얻은 공식적인 정보라 해도 보도가 필요한 내용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라는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생각할 때 가해자 측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제시될 때 이 주장이 기존의 가부장제적 성의식을 자극하거나 상상력을 부추기는 내러티브 형태로 제공되면,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즉, 좋은 저널리즘이 무엇인지와 페미니즘의 문제제기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통해 보도 여부 및 보도 내용을 결정했어야 한다.

또한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슈가 된 사건의 피해자라고 해서 사생활 영역까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성폭력 사건에 ‘피해자 측 책임이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¹⁰⁾. 피해자 측 책임이 있다는 것, 즉 성폭력 범죄 2차 피해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이 인식을 언론이 앞

9) 서울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11년 연구에서, 반여성적인 태도, 적대적 성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가해자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경향이 나타났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게 되면 이는 자연 가해자에 대한 동정으로 이어지므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각한 인식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 김은지, 박지선(2011).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법>, 2(2), 171-183.

10) 한국기자협회,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url: 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1)

장서서 재생산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이 있었으며 미투 운동 보도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 역시 이러한 부분이었다.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더욱 가중하는 것은 피해자가 정말로 ‘피해자’인가를 검증하겠다는 주변의 인식과 태도이다. 사람들은 이를 피해자의 성격이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순수한 피해자인가 아닌가를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통해 알 수 있다는 인식 그 자체가 성에 대한 가부장제적 이중 관념이 응축된 것이다. ‘진정한 미투’등의 용어가 언론을 통해 유포되는 등, 미투 운동 국면에서 순수한 피해자를 갈라내고 사이비 피해자 혹은 거짓말하여 피해자인 척하는 가해자(무고 가해자)가 있으니 무고죄를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이 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의 행실이나 인격에 대한 거론을 한 내용을 언론 보도가 매개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보도 양태에서 이러한 고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증언된 내용에 대해서 편취하여 선정적인 제목을 붙이는 것, 재판 자체를 경주처럼 중계하는 것, 성폭력과 관련된 사안을 늘 양측의 진실 공방으로 만드는 것 등이 이제까지의 성폭력 보도가 피해자를 불리하게 만들고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강화한다고 지적되어 온 부분임에도 이러한 구태가 그대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특정한 이해 방식을 유도하는 내러티브와 이에 기반을 둔 프레이밍이 언론 보도에서 드러나고, 이를 통해 2차 피해를 키웠다는 문제가 있다. 7월 12일 자 중앙일보 보도를 비롯한 주요 언론 보도는 피고인의 옹호를 위해 증인으로 나선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기사화하면서, “새 국면” 등의 표현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실은 피해자가 아닐 수 있다는 근거가 제시된 양 프레이밍(틀짓기)을 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서 프레이밍은 고정관념을 생산하며 사건의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반복하여 생산하면서 사회의 문제 이해와 인식 구조에 영향을 미쳐 왔다¹¹⁾. 이번 재판의 문제 된 보도에서 동원된 프레이밍은 문제가 무엇인가,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어떤 대안이 제시되는가에 대해서 모두 ‘순수한 피해자’ 프레이밍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언론 보도가 놓친 것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 개념과 그 의미, 그리고 이제까지의 법적 해석과 법리 싸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 보도였다. 이제까지 ‘위력’의 해석이 좁게만 적용되었다는 사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 사건에서 무엇을 ‘위력’으로 개념화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이 사안을 대하는 사람들이 공통의 기반을 두고 논의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를 끌어내는 장을 열기보다는 언론은 피해자와 피고인 측의 말 중 무엇이 “진실”인가를 경쟁시키는 방향을 택했고, 여기에서 피고인 측의 말에 초점을 두고, 이를 ‘사실’로 보도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재판에서 이러한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지, 그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이를 제목에 부각하면서 “새 국면, 새 증언”이라는 틀을 만들어냈다. 이 틀에서 새롭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새로 발굴되었고 이로

11) 김경희(2015). 뉴스 구성 관행과 고정관념의 재생산. <미디어, 젠더 & 문화>, 30(1), 5-45.

인해 ‘과거 증언이 거짓이다’라는 증거가 발견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면, 문제 자체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상황에서(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란 무엇인가), 문제의 원인은 피고인 측 증인의 말에 따라 ‘피해자가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으로 여겨지게 되었으며, 그러므로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식으로 내러티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새로운 증언이 제시된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의 경우, 해당 내용이 이미 피해자도 진술하였던 것이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통상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였다는 맥락을 누락한 채로 보도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비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위력 관계의 해석을 위해 이러한 점이 중요하다. 하지만 언론은 이러한 전후 맥락을 삭제한 채로, 피고인을 옹호하기 위한 피고인 측 증인의 “말”을 “사실”로 빌어, “피해자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계를 주도했으며 그러니 피해자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인식을 구성하고,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유도하는 것”이라는 가부장제적 성인식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이러한 보도 방식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재확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에 있다. 폭력과 협박이 없다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성폭력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은 널리 퍼진 대중의 인식이기도 하다. 지난 4월 5일 한국일보에서 보도된 국민 인식조사 결과는, 84%가 “미투 운동 지지”에 긍정적으로 응답함에도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46%에 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¹²⁾ 이런 맥락에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진짜 미투”와 “가짜 미투”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성폭력에 대한 보수적 인식을 강화해왔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순수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방식으로 내러티브가 구성된 것은 기존의 언론 보도가 ‘순수한 피해자’ 상의 의미를 구성해 온 것에 대한 비판을 언론 보도에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바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제까지 우리 언론의 성폭력 보도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힘없고 유약한 순결하고 순수한 피해자상을 구성해왔다. 순수하고 순진한 피해자란, 사회적으로 적절한 활동을 하는 중에 성폭력 피해를 본 여성, 전형적인 가해자인 낯선 사람에게 의해 피해를 입고 이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한 여성을 말한다¹³⁾. 이에 따라, 피해자가 성인이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관계인 경우, 언론이 주목하는 것은 이 피해자가 순진한 피해자이고 유책성이 없었는지를 심문하고 가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를 뉴스의 대상으로 삼아 왔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¹⁴⁾

피고인 측이 피해자가 현명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약하고 순진한 피해자이지 않다는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심이 있었다고 피고인 측 증인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가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해서 특정한 상을 심어주어, 위력이라는 권력 관계를 무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발언을 사실로 보도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사실’ 혹은 ‘이전에는 국민들이 잘 몰랐지만 이제 알아야 하는 재판 상 중요한 사실’로 제시하는 것은 피해자 유책론에 대한 기존 고정관념의 강화를 가져올 뿐이다.

12) “2030 남성 33% “성폭력, 피해자 책임” 또래 여성과 인식차 커“. <한국일보> 2018.04.05. (url : <http://hankookilbo.com/v/66081cb896a44747ade1976813a2fb53>)

13) 김지선 (2006).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여성의 삶: 사회적 구성과 결과>. 서울: (주)한국학술정보

14) 허민숙·신경아 (2014). ‘가족들’ 안과 밖의 여성 그리고 남성. 한국여성연구소 (편), <젠더와 사회> (299~328쪽). 서울: 동녘.

두 번째 성폭력 범죄 보도에서 문제였던 점은 낯선 피해자에 의한 병리적 행위로 성폭력 범죄를 그려냄으로써, ‘일반적인’ 남성, ‘친밀한 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가려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미디어는 낯선 이에 의해 불가해하게 당하는 폭력적 경험이 성폭력이라고 정의하는 경향이 있었다.¹⁵⁾ 범죄자의 경우 가정환경이나 질환을 강조하여 언급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표현했다. 선량한 일반인과 범죄자를 구분하여 범죄자에 의한 성폭력 범죄만이 있다는 식으로 인식하게 했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문제가 여론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틀짓기 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피고인이 잘 알려진 경우, 그 이전에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던 경우 잘못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처럼 대중이 이해하는 경우가 많고, 이 점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1월 한국에서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래로 미투 사건의 보도 자체가 2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논의됐다.¹⁶⁾ 미투 보도를 통해, 언론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형식적 중립주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서 사실 보도라고 부르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 특히나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이러한 보도 관행이 오히려 권력 관계를 외면하는 일이라는 점이 논의된 바 있다¹⁷⁾. 이번 보도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했지만 뜻한 대로 되지 않아 모함하는 여성”이라고 주장하여 면죄를 받으려는 피고인의 전략을 ‘사실’로 중계해 줌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가속하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과 무고에 대한 잘못된 인식, 즉 여성이 양심을 품고 남성을 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 이를 엄벌해야 한다는 내러티브를 구성하게 된다.

4. 온라인상 피해자 비방 행위와 문제점

온라인 댓글 공간은 현재 한국의 온라인 상황에서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아무 의식 없이 자행하게 되는 공간이다. 게다가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 수행비서 어씨가 직접 자신의 실명 아이디로 비방 댓글을 달아 고발되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직접 사건의 의미를 고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일에 나서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통상 댓글은 영향력이 적고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한다. 하지만 댓글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지난 5월 한국 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에서는 포털 뉴스 서비스 및 댓글과 관련한 국민 인식조사를 수행한 바 결과, 기사를 본 전체 독자가운데 포털 사이트의 뉴스 댓글을 읽은 사람은 70.2%인데 이들은 댓글을 읽으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고 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댓글을 읽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생각이 궁금해서(84%)라고 답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댓글이 주도적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44.2%로 나타났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여론이 댓글에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상당수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¹⁸⁾. 이러한 상황에서 뉴스 기사에 달리는 댓글은 온라인을 통한 2차 피해이면서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구성하

15) 김은경, 이나영(2015). 성폭력, 누구에 대한 어떤 공포인가. <미디어, 젠더 & 문화>, 30(2), 5-38.
 16) 최이숙(2018). 미투 운동 관련 언론 보도에 나타나 2차 피해의 양상.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여성가족부 주최 <언론 속의 미투> 토론회 발표자료.
 17) 최이숙, 위의 글.
 18) 한국언론진흥재단, <Media Issue 4권 5호 <포털 뉴스 서비스 및 댓글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 인식조사> 2018.05.31.

고 유포하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피해자를 탓하는 언론 보도가 댓글 방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과 댓글 공간이 적극적으로 주도될 수 있다는 점, 검색어 올리기 등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여론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언론 보도와 댓글의 관계에서 선정적 뉴스 제목이 이를 적극적으로 방조하게 된다. 뉴스 소비 방식이 포털 서비스를 통한 것으로 바뀐 현재 시점에서, 언론사들은 수익과 직결되는 뉴스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제목을 더욱 선정적, 자극적으로 뽑아왔고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다수 행해졌다. ‘헤드라인 저널리즘’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뉴스 기사 제목은 일종의 사건 틀짓기와 의미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친다.¹⁹⁾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에서도 자제를 요청한 피고측 증인의 자극적, 선정적 표현을 여과 없이 제목에 넣고 본문의 리드(lead)로 제시하는 보도는 2차 피해를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부장제적 ‘순수한 피해자상’에 어긋나는 피해자로 틀짓기 하는 선정적 제목은 댓글을 통한 2차 피해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보도에서 피고인 측 증인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제목이 많았는데, 이는 수년 전부터 국내 언론의 뉴스 헤드라인 관행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이기도 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해외 통신사보다 한국 연합뉴스의 경우 감정적 기사 제목을 더 많이 사용하고, 직접 인용구를 남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직접 인용구의 사용이 감정적 제목으로 이어진다. 감정적 표현이나 직접 인용구는 기사에서 다루는 사안의 단편적 특성만을 강조하게 되며, 기사를 읽는 이가 제목만으로 기사 내용을 잘못 읽게 만들고,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선정적 제목으로 이용되는 것이다²⁰⁾. 이번 사건 보도에서 선정적 제목은 모두 피고인 측 증인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서 만들어졌다. 사안 즉 문제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친밀한 가족이 증인으로 법적, 윤리적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끌어 내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증인의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으로 피해자에 대한 묘사를 수행한 것이 뉴스 제목이 되어 소비되었다.

게다가 우리나라 언론은 좋은 저널리즘이라면 하지 않을 관행인 “네티즌 인식”을 보도하는 관행을 만들어 왔으며, 이로 인해 소수 인터넷 댓글이 여론인 양 둔갑하는 일도 많았다. 피해를 의심하고, 피해를 사소한 것으로 만드는 댓글이 수없이 게시되는 동안 미디어가 이를 사실로 입증해주는 악순환의 고리에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개인 방송, 팟캐스트 등 다양한 개인의 목소리가 공론장에 등장할 수 있는 시대에, 이 사건을 왜곡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다양한 종류의 개인 방송과 뉴스 짜깁기 방송이 여론 형성에 영향을 주는 중이다. 다수의 유튜브 뉴스 채널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공중파나 주요 미디어는 보도하지 못하지만, 자기들은 온라인 매체이니 보도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라는 식의 제목을 채택한다. ‘충격, 폭로, 마침내 밝혀지는’ 등의 표현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 내용이 기존의 뉴스 보도에서 더 나아가는 것은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제목 자체가 일정한 방향을 유도한다. 바로 피해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아무 근거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추론하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더 많이 조사하

19) 이준호(2015). 헤드라인 저널리즘.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9(1), 249-280.

20) 김경희, 이소현(2011). 뉴스통신사 웹 사이트의 뉴스 구성방식과 기사 제목 편집에 관한 연구. <한국 방송학보>, 25(1), 77-115.

는 형태는 사법 담당자의 인식 속에서도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¹⁾. 온라인을 통한 이런 헤드라인 방식의 뉴스 제공이, 무차별적 2차 가해를 가하는 댓글을 끌어낸다. 현재 사회의 가부장제 성 의식에 조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사회적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자리 잡기 힘들어지는 문제점이 성찰 없는 언론 보도를 통해 가중된다고 하겠다.

5. 나가며

이번 사건에서 진행된 재판 내용 언론 보도는 사실을 전달한다고 주장하지만, 효과적으로 피해자의 성격이나 이력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증언에 신뢰를 없애려는 피고인 측의 전략을 뒷받침해 주게 되었다. 온라인 중심 뉴스 소비 상황에서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가중되고,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화되는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언론 보도가 성폭력 피해를 보도하면서 객관적인 입장을 갖는다는 것은 형식상의 객관성일 뿐 사실상 가해자 중심적 시각을 재생산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이 누차 논의됐음에도, 특히 이번 재판 보도에 있어 이러한 성찰적 태도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 보도가 양산되었다. 온라인 공간 역시 왜곡된 성에 대한 이중 관념과 성 규범이 반영된, 피해자를 모욕하는 언어가 주류를 이루는 상황이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공론장, 그리고 성 평등 사회에 대한 미래 지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미투 운동을 통해 성폭력 범죄 보도에 대한 저널리즘의 윤리적 판단기준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판단은 아직 이른 것이었을까. 현재의 가이드라인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하는 토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반복해야 하는 것은 분명 문제적인 상황이다. 무엇보다, 언론보도가 성폭력 사건 보도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가 명확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위력에 의한 성폭력' 개념을 알려야 했고, 성폭력 범죄가 어떤 것인가,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 유책론이 왜 문제인가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해나가는 것이어야 했음이, 출발점이었다.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 언론이 새롭게 성폭력 사건 보도에 대한 저널리즘 윤리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21) 허민숙(2017). “너 같은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 <한국여성학>, 33(3), 1-31.

‘국민 알권리’ 빙자해 ‘피해자 인권침해’하는 안희정 성폭력 공판 보도

김언경(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정식 재판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언론의 성폭력 관련 보도의 또 다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은 한 사건이 겪을 때마다 계속 부적절한 사례를 덧붙여 업데이트되고 있지만, 보도윤리의 선을 지켜달라는 내용이 언론에 반영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아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018년 7월 2일부터 25일까지 발표한 안희정 재판 관련 모니터보고서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각 매체별 문제점과 부적절성의 수위가 다르지만, 큰 틀에서 공통된 문제의식은 이렇다.

1. 성폭력 재판보도를 생중계 수준으로 전하고 토론하는 언론, 적절한가?

현재 언론의 안희정 관련 재판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언론은 공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고 있는데, 국민은 자신이 거의 모든 정보를 균형 있게 듣고 있다고 착각하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판단하게 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은 김지은 씨 측의 증언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안희정 씨 측 증언은 공개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애초 ‘비대칭’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언론이 제아무리 공정하게 정보를 제공하려 노력했다라도 이번 재판 관련 보도는 분명하게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안희정 재판에서 나오는 별별 자료와 증언을 다 전해줬다. 때문에 국민은 매 공판마다 비대칭된 정보, 편향된 정보를 받으면서도 본인이 주요 쟁점과 증언은 모두 전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토대로 사안을 이해하고 판단하며 여론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제 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주의사항을 담은 조항이 별도로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재판의 결과를 단정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미리 판단하는 내용 2)재판의 결과 또는 재판의 내용과 관련되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 3)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는 내용 4)그 밖에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된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이것은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서 언론이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등 여론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계하자는 취지의 조항이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안희정 재판 관련 방송은 대부분 이 조항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번 안희정 재판에 대한 과잉보도는 언론 본인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하지만, 보다 신중하게 재판 공개 및 언론보도에 대한 주의를 요청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국민도 언론이 펼쳐준 '탐정 게임'에 놀아나지 않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했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성폭력 사건 보도를 이번처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행태인가 우리 사회가 분명히 평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종편 주요 시사토크프로그램의 안희정 관련 보도량' 관련 모니터 보고서 일부

- 재판이 있으나 없으나 매일같이 '중계'하는 TV조선

TV조선·채널A·MBN 종편 3사의 주요 시사프로그램(MBN <뉴스와이드>,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채널A <정치데스크>, <뉴스TOP10>)은 안희정 관련 첫 재판 이후 증인들의 주장을 매일같이 중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명	MBN <뉴스와이드>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채널A <정치데스크>	채널A <뉴스TOP10>
전체 방송시간	738분	681분	647분	766분
안희정 재판 관련 방송시간	36분 (4.9%)	141분 (20.7%)	38분 (5.9%)	37분 (4.8%)

△ 7/3~7/13 프로그램별 전체 방송시간 대비 '안희정 재판' 관련 보도 시간 비교 ©민주언론시민연합

특히 TV조선 <이것이 정치다>는 첫 재판 결과를 보도한 3일 이후 안희정 씨 부인 민 씨의 증언이 나온 13일까지 7월 5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안희정 재판'을 다뤘습니다. 총 681분의 방송시간 가운데 20.7%에 이르는 141분을 '안희정 재판'에 할애했습니다. 타 프로그램들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재판이 2.6.9.11.13일 있었던 만큼 매 재판을 중계하는 것을 넘어서 재판이 따로 없던 날까지 선정적인 보도를 이어간 겁니다.

2. 성폭력 재판의 특성상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적 자료, 보도하지 말았어야

안희정 첫 공판 이후 보도에서 가장 충격을 준 것은 산부인과 의료기록에 대한 세세한 설명이 언론에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이 자료는 김지은 씨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로 법정에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진료기록은 사생활 중요정보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자료이다. 그래서 의료법에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요건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피해자가 재판을 위해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재판정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되었다는 이유로, 언론이 그 내용을 마구잡이로 보도해도 된다는 생각은 애초 하지 말았어

야 한다.

그런데 1차 공판 다음날, 언론은 온통 의료기록 이야기로 도배가 되었다. 그저 ‘김지은 씨가 성폭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병원기록’ 정도로 언급했어도 될 사안임에도 언론은 진료를 받은 날이 ‘어떤 날’인지까지 언급했다. <산부인과>, <출혈>, <성관계>라는 단어를 사용해 누가 더 천박하고 선정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제목을 뽑을까 경쟁이라도 하는 수준이었다.

이번 안희정 재판 보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폭력 가이드라인>에 “성폭력 관련 재판에서 산부인과 의료기록이 나오더라도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주문을 추가하고, 부적절한 사례를 업데이트해야 할 판이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제정한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은 “언론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라고 해서 피해자나 가족의 사생활이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여기에 의료기록을 보도하지 말라는 말은 없으니 말이다. 일단 추가하고 난 뒤 우리는 또 언론사에 가이드라인을 지키라고, 이를 위해서 교육을 하라고 거듭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과연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가이드라인이 부족해서 기자들의 이런 부적절한 행태를 하는 것일까. 우리 사회는 성폭력 관련해서 어떤 사안이 터질 때마다 기자들을 상대로 계속 이것은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추가하고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는 걸까. ‘기자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그 단순한 경계를 이렇게 꾸준히 계속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사실은 부적절함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그냥 돈벌이를 위해서 타인에게 돌팔매가 될 수 있는 제목을 붙이고 피멍이 들게 할 2차가해성 기사를 내놓는 것이 아닐까. 따라서 매번 보도참사 수준의 기사를 저질러놓고 사후에 대책으로 가이드라인을 추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답답한 심정이다.

■ <산부인과 기록> 관련 민언련 모니터보고서 일부

- SBS 온라인 기사가 최초

네이버에 기사를 송고한 시간을 기준으로, 김지은 씨의 진료기록 내용을 가장 먼저 대중에게 알린 매체는 SBS입니다. SBS의 온라인 기사 <안희정 첫 재판 공방…“덧 놓은 사냥꾼” vs “법적 책임 없어”>(7/2)의 작성 시간은 2일 오후 1시 11분입니다. 기사는 오후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서류증거를 소개하며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성관계 후 비정상적 출혈이 있어 올해 2월 26일자 산부인과 진료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진단서를 받은 사실”이 증거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SBS 보도 이후 3시간여가 지난 뒤인 오후 4시 32분 연합뉴스가 네이버에 올린 <안희정 첫 재판 공방…“덧 놓은 사냥꾼” vs “법적책임 없어”>(7/2) 종합 기사는 위 SBS 기사와 정확히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 3분에 송고했던 <피고인 안희정 법원에…“덧 놓은 사냥꾼” vs “법적책임 없어”>(7/2) 기사에는 진료기록 관련 언급이 없습니다.

SBS가 ‘보도 내용’으로 진료기록 내용을 언급 한 최초 매체라면, 이데일리는 보도 제목에 ‘병원기록’을 부각한 첫 매체입니다. 2일 오후 5시 44분 작성된 이데일리 보도 제목은 <안희정 첫 재판서 검 ‘원치 않는 성관계’ 명시 병원기록 공개>(7/2)입니다. 이데일리는 이 정보를

<김지은씨 산부인과 진료에 '원치 않은 성관계 탓' 명시>라는 소제목으로 한 번 더 부각했습니다.

- 구체적 정보, 보도 제목으로 부각한 중앙일보.국민일보.조선일보

'병원기록'이라는 언급을 넘어, 구체적으로 '산부인과 진단서'라는 정보를 최초로 제목으로 부각한 매체는 중앙일보입니다. 특히 중앙일보의 <안희정 첫 재판…김지은이 제출한 산부인과 진단서엔>(7/3)이라는 보도 제목은 노골적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보도 내에서 전달한 정보는 SBS의 첫 보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 기사가 나온 직후 나온 월간조선 관련 기사 제목은 <안희정 첫 재판, 검찰과 김지은 측 산부인과 진단서 증거로 제출>(7/3)입니다.

국민일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관계' '출혈' '산부인과 진단서'라는 키워드를 모두 보도 제목에 활용했습니다. 문제의 국민일보 기사 제목은 <"원치 않은 성관계에 의한 출혈" 김지은 산부인과 진단서 들여다보니>(7/3)입니다. 중앙일보 기사 제목과 마찬가지로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입니다. 국민일보 이후 나온 조선일보 관련 기사 제목 역시 <"원치않는 성관계로 출혈"...산부인과 진단서 제출한 김지은씨>(6/3)입니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를 'Pick 기사'(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로 선정했습니다. 국민일보와 조선일보가 보도 제목에 가해자로 지목된 안희정 전 지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오직 김지은 씨의 이름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 역시 눈에 띕니다. 이 외에 MBN, YTN, 국제신문, 서울신문, 여성신문, 부산일보, 더리더, 뉴스웍스, 아이뉴스23 등도 관련 기사 제목이나 본문을 통해 김지은 씨의 진료기록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 방송 보도에서 진료기록 언급한 YTN.MBN.OBS

YTN과 MBN, OBS는 김 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 내용을 방송 보도에서까지 언급했습니다. 먼저 YTN 뉴스통 <아시아나 기내식 논란, 갑질 의혹으로 확대>(7/3)에서 김광삼 변호사는 "약간 안희정 전 지사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 지사와 성관계 후에 비정상적인 출혈이 있다는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진단서를 받을 때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의한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MBN은 7월 3일 뉴스빅5에서 "올해 2월 26일에 김지은 씨가 비정상적인 출혈을 호소하면서 산부인과를 찾았었고요. 그때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인데. 진단서의 내용이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출혈을 호소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날짜입니다.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2월 25일이, 그 전날인 2월 25일이 김지은 비서가 이야기했던 마지막 성폭행이 있었던 날이거든요"라는 상세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MBN은 별도의 자료화면을 만들어 이 내용을 재차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OBS도 7월 3일 '오늘뉴스'에서 관련 자료화면을 배경으로 "오늘 나왔던 새로운 얘긴데, 김 씨 측에서 산부인과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지요. 2월 중순경 진단받은 진단서인데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의한 출혈이 있었다' 이런 소견이 있었다고 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3. 안희정 측 주장들 그대로 보도되는 것이 적절한가.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만든 <성폭력 사건보도 실천요강>은 “2.기사 작성 및 보도시 주의사항”으로 “7.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진실인 것처럼 여과 없이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에서 나온 일방의 증언을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심의 규정 위반이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는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는 내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 ④항은 “방송은 피고인,피의자,범죄혐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범죄행위가 과장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인들의 자의가 섞인 주장들을 그대로 중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을 불공정한 행태이다.

그럼에도 언론은 남탓만 하고 본인의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특히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7/16)에서 보여준 태도는 경악스러운 수준이다. 방송에서 이우라 기자는 “재판이 공개된 이후에 피고인 측 증언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피해자의 평판과 이미지가 왜곡 보도 돼서 2차 피해가 심각하다”는 피해자 측 주장과 “자극적인 보도가 우려스럽다”는 재판부의 자제 요청을 전했다. 이런 재판부의 의견을 전할 때는 ‘앞으로 저희도 주의해서 전하겠다’는 정도의 코멘트로 마무리되는 것이 언론의 상식적 태도다. 그런데 TV조선은 엉뚱한 반론을 펼쳤다.

TV조선 엄성섭 앵커는 “다만 한 가지 또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측의 경우에는 기자들이 들어가는 것에 별로 반대를 하지 않았는데. 물론 피해자이기 때문에 김지은 씨 측에서는 비공개 재판을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 재판 상황을 다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점. 그래서 김지은 씨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기자들이 알지 못 한다는 점, 그래서 다 전해드리지 못한다는 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검찰 측에서 김지은 씨가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는지, 크게 김지은 씨 사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얘기를 해주시면 아마 공정하게 언론 보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혹은 또 너무 이렇게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비판하기에는 구조상의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TV조선의 이러한 태도는 적반하장을 넘어 언론이기를 포기한 태도이다.

■ 안희정 측 주장들 일방적 서술 모니터보고서 중 일부

- ‘피고 측 변명과 증언’을 제목으로 뽑은 언론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주장을 ‘VS’ 구도로 나열하며 안 전 지사 측의 ‘학벌’ ‘고학력자’ ‘장애인’ ‘애정관계’ 등의 일방적 주장을 제목에 부각한 보도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을 전면 부각한 보도는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잘못된 사회적 통념을 확대,재생산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안 전 지사 측이 ‘성폭력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김지은 씨가 ‘장애인도 아동도 아닌 결단력 있는 고학력 여성’이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은 그 자체로 비판받아 마땅한 행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쓰고, 심지어 제목으로까지 부각하는 것은 부적절한 보도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대표적 문제 보도 예시로는 세계일보 <‘안은 뺏을 놓고 기다린 사냥꾼’ VS ‘뭇 소리, 형법상 범죄 아닌 이성적 감정’>(7/2), 채널A <“학벌 좋은 여성” vs “나르시시즘”>(7/3), SBS <검 “뺏 놓은 사냥꾼처럼” vs 안희정 측 “합의된 성관계”>(7/3), 뉴시스 <안희정 첫 공판…“애정 관계일 뿐” VS “나르시시즘 불과”>(7/3), 서울경제 <안희정 첫 재판…“대권주자 위력으로 성폭행” VS “피해자는 고학력자 여성”>(7/2), <안희정 비서 성폭행 혐의 공판, “뺏 놓은 사냥꾼 vs 김씨 장애인·아동 아냐” 팽팽>(7/2)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종편 시사토크쇼에서 방송한 안희정 관련 대담의 제목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사건과 관련해 자극적인 단어를 뽑거나 피고 측에 유리한 증언들을 중심으로 양측의 ‘공방구도’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TV조선과 채널A의 거의 모든 대담 제목이 참으로 선정적입니다.

프로그램명	대담 제목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산부인과 진단서>(7/3)
	<“혼인 경험, 고학력”>(7/4)
	<가림막 등장>(7/6)
	<“희망이고 왕이었다”>(7/9)
	<“애 아빠 살려야지”>(7/10)
	<반격나선 측근들>(7/11)
	<셀프 호텔 예약>(7/12)
채널A <정치 데스크>	<리조트에서 무슨 일이?>(7/13)
	<“24시간 휴대전화 소지”>(7/4)
	<안희정의 반격>(7/11)
채널A <뉴스 TOP10>	<안 부인 남편 구원투수 될까>(7/13)
	<“학벌 좋은 여성” vs “나르시시즘”>(7/3)
	<“지사님, 저 울어도 되죠?”>(7/11)
	<“김지은이 호텔 직접 예약”>(7/12)
	<“비서 마누라’로 불렸다”>(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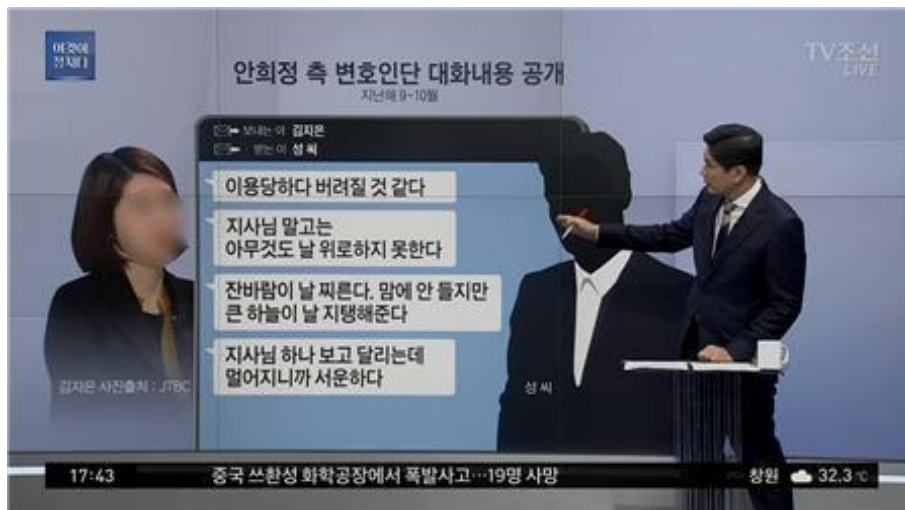
△ 7/3~13 시사토크 프로그램 속 안희정 재판 관련 대담 제목 비교 ©민주언론시민연합

- 재판에 나왔다고 무조건 보도해도 되는 걸까

제목을 피고 측 증언으로 뽑다보니 방송 내용은 더욱 적나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널A <뉴스TOP10>은 <“비서 마누라’로 불렸다”>(7/13)에서 피고인 측 주장들을 중심으로 방송을 구성했는데요. 황순욱 앵커는 먼저 “오늘 공판에는 ‘안희정 전 지사의 존재를 거스를 수 없는 절대권력, 하늘과 같은 존재다’라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또 반대되는 진술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분위기를 강조한 내용이었습니까?”라며 피고 측 증인의 증언을 거론했고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절대권력을 의미한 게 아니라)김지은 씨가 정말 마음놓고 기대고 항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썼다”면서 “도대체 김지은 씨가 스스로는 안 전 지사를 지

키겠다고 안 전 지사의 호위무사라고까지 얘기했던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바꿔서 할까라고 본인(피고 측 증인 성 모 씨)은 의아해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증인의 발언이라는 이유로 피고에 유리한 정황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한 겁니다.

이어서 황순욱 앵커는 “그 스위스 출장 이후에 김지은 씨가 SNS 문자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보냈어요. ‘헤어져서 슬퍼요. 연락 이제 못해요’ 이런 증언이 나왔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라며 재차 구체적인 재판 내용을 물었습니다. 양지열 씨는 “(피고 측 증인)성 씨가 김지은 씨와 주고받았던 문장들이 메신저로 100페이지 넘게 그 기간 동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안 전 지사로부터 어떤 일을 당했다’거나 이런 얘기는 없고 오히려 뭔가 ‘헤어져서 슬프다, 이제 연락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서 ‘그냥 젊은 친구니까 연애를 했었나 보다’ 했지 별로 관심을 갖지는 않았다”라며 피고인 측 증인의 입장을 읊었습니다. 이후에도 방송은 반복적으로 재판에서 나온 피고 측 증언을 중계하는 방식으로 흘러갔습니다.



△ 변호인 측이 공개한 대담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TV조선 <이것이 정치다>(7/10)
 <본 발제문에서는 피해자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였음>

이런 방송 구성은 TV조선도 비슷합니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7/10)의 경우 피고 측 증인 성 모 씨가 김지은 씨와 주고받았다고 밝힌 메신저 대화 내용을 그래픽 화면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 ‘김지은과 안희정 부인의 싸움’? TV조선의 ‘막장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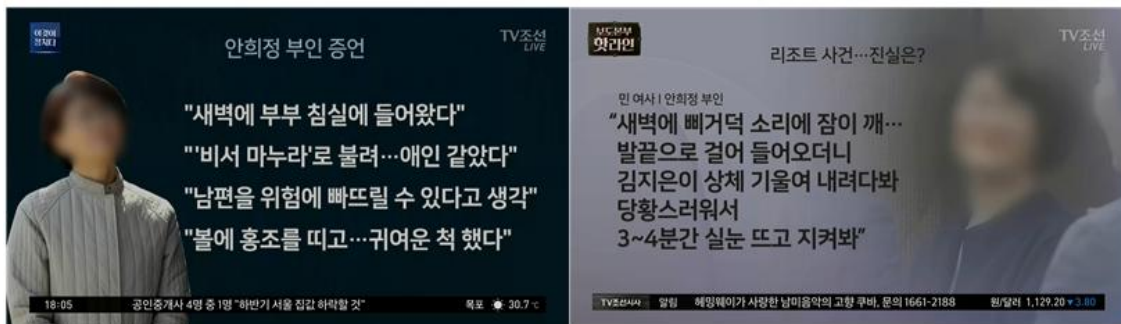
TV조선 <이것이 정치다>(7/16)에 패널로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는 피고 측 증인으로 나온 안 전 지사 배우자 민 모 씨의 증언을 다루던 중 “이번 재판의 결론은요 제가 보기에는 김지은과 민주원의 싸움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주장의 맥락이나 의도와 관계없이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가해자의 범죄 여부를 지워버린 채 성폭력 범죄를 피해자를 포함한 ‘여성들끼리의 싸움’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가히 ‘막장’ 발언이라 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입니다.

이 발언에 TV조선 김미선 기자가 “네?”라며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서정욱 씨의 ‘막장 발언’에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미선 기자는 “아, 민 씨요”라고 정정했고 윤정호 앵커도 “민 모 여사”라고 수정했습니다. 서 씨가 방송 내내 ‘민 모 씨로’ 지칭하던 피고 측 배우자의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에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안희정 씨 부인의 실명은 애초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로 언론에 실명이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인지 대다수 언론에서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두 앵커가 놀라며 정정해야 할 것은 호칭이 아니라 ‘여성끼리의 싸움’이라는 저급한 관점부터 고쳐짚어야 합니다. ‘안희정 성폭행’ 재판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 여부를 따지는 사건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이름은 지우고 피해자인 ‘여성’과 피고인 배우자인 ‘여성’, 두 여성의 싸움으로 이 사건을 바라본 TV조선의 시각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을 그대로 재연하고 있습니다.

- 포장만 ‘양측 공방’, 결국엔 ‘안희정 부인 증언’ 부각한 TV조선

서정욱 씨 발언만 문제가 아닙니다. 공개된 피고 측 증언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한 남자를 둘러싼 두 여자의 경쟁’, 혹은 ‘이미지 전쟁’으로 몰아가고, 자극적인 가십으로 소비하는 TV조선의 속내는 여기저기서 드러났습니다. 윤정호 앵커는 “김지은 씨를 돕고 있는 전국성폭력 상담소협의회”의 입장이라며 “안 전 지사 측이 주로 이야기한 게 김지은 씨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요”라고 소개했는데요. 그러나 정작 화면에는 재차 피고 측에 유리한 안 전 지사 배우자 민 모 씨의 발언이 무려 4개나 큼지막하게 노출됐습니다. 양측 공방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피고 측의 자극적인 증언들을 반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 피고 측에 유리한 자극적 발언들 무분별하게 보도한 TV조선(7/16)

같은 날 방송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7/16)은 아예 대담의 제목을 <이리보고 저리보고>라고 뽑았고 화면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피해자 세 사람의 사진을 삼각형 구도로 세워놨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세 인물 간의 삼각관계인 것처럼 묘사한 겁니다. 또한 TV조선 <이것이 정치다>(7/16)와 마찬가지로 양측 공방을 소개하면서도 민 모 씨의 진술에 더 비중을 두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엄성섭 앵커는 “사실 그 부인을 법정에서 세운 안희정 전 지사야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부인 민 모 여사는 할 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증언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계



△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7/16) 제목 화면 갈무리
 <본 발제문에서는 피해자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였음>

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어요”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이루라 기자는 “김지은 씨가 남편을 일방적으로 좋아해서 내가, 본인이 불쾌했다. 남편을 위협하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마누라 비서’로 불렸다” 등 민 모 씨의 여러 증언들을 열거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증언만 본다면 김지은 씨가 마치 어떤 질투 심리를 느끼지 않았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라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피해자를 공격하는 듯한 해석을 굳이 강조 해준 겁니다.

- ‘안희정 배우자는 힐러리 닮은 꼴’?

이렇게 피고 배우자 및 가해자만을 부각하며 범죄를 흥밋거리로 소비하는 TV조선의 보도는 결국 민 모 씨를 힐러리에 비유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7/16)의 고성국 TV조선 객원해설위원은 “안희정 씨 부인은 안희정 씨를 어떻게든 사법적으로 구해야 하겠다고 결심하고 나선 거죠. 물론 사실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안희정 씨 같은 피고 인이나 그 가족들한테는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를 테면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애들 아빠인데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요”라며 민 모 씨 입장을 구구절절 설명하더니 “조금 확대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힐러리 클린턴이 클린턴에 대해서 보여준 태도 같은 것들이 사실관계보다는 그 정치적 권력관계를 힐러리가 더 중시한 결과, 어떻게든 클린턴을 비호하고 변명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열심히 하잖아요. 일단 방향을 틀기까지가 문제지, 일단 방향을 잡고 나면 할 수 있는 건 다했던 게 힐러리의 모습인데. 그러면 안희정 씨 부인의 모습도 그렇게 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진행자 윤정호 씨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 안희정 전 지사가 저희 TV조선에 출연해서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예로 들면서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라며 2016년 TV조선 <라이프쇼>에 출연한 안 전 지사 모습을 보여줬고 “안 전지사는 계속 저런 식으로 김지은 씨를 몰아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미선 기자는 “르윈스키와의 성관계 스캔들이 터졌을 때 힐러리는 자서전을 통해서 그 얘기

를 들었을 때 클린턴의 신체 일부, 목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싶었다고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안 전 지사께서는 힐러리의 자서전을 보지 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라고 과격한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본인들의 이러한 개인적인 감상이 도대체 성범죄 보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 이번엔 ‘정치인 VS 시민단체’…TV조선의 이상한 관점

단순히 ‘힐러리 비유’에 그친 것도 아닙니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7/16)은 이 사건을 ‘정치인과 미투 시민단체의 대결’로 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고성국 씨는 “(안희정 씨 측은)사법적으로만 유죄를 면하면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문제는 또 다른 형태의 정치적인 행보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고 이 사법적인 굴레를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부인의 증언이라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희정 씨나 그 부인이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실은 죄가 아닌데 안희정 씨를 죄를 지은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몰릴 수 있잖아요. 김지은씨 입장에서. 또는 미투 운동의 정당성을 옹호하고자하는 이런 많은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는 전면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죠. 이거는 이미 안희정 씨 개인의 사건을 넘어서 있다는 말이죠, 그 점에서는 이전선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시시비비가 가려지지도 않은 재판에 대해 굳이 피고 측의 ‘정치적 해법’을 장황하게 해석하는 것은 분명 심의규정 위반이며, 범죄의 사실관계보다 ‘진영 간 싸움’을 중요시 하는 TV조선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비윤리적인 관점입니다.

4. 과거 영상 찾아 피해자 얼굴 부각하기, 이제 정말 그만하자.

방송이 피해자의 과거 영상 등을 이렇게 집요하게 찾아내고, 하이라이트 처리하는 것 역시 심의규정 위반입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보호) ②항은 “방송은 부당하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의 경우 특별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2조(공개금지) ①항은 “방송은 범죄사건 관련자의 이름, 주소, 얼굴, 음성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며 2호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를 특정했습니다. 또한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만든 <성폭력 사건보도 실천요강>은 “2.기사 작성 및 보도시 주의사항”으로 “3.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보도는 하지 않아야 한다. 이슈가 된 사건의 피해자라고 해서 사생활 영역까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이런 행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방통심의위가 악의적인 피해자 부각 영상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주기를 촉구합니다.

■ 피해자 얼굴 노출 관련 모니터 보고서 일부

- '피해자 얼굴 노출', 이제 그만 할 때 됐다

TV조선·채널A의 안희정 성폭행 혐의 재판 관련 방송에서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화면에서 반복적으로 피해자 얼굴을 노출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MBN <뉴스와이드>는 3일부터 13일까지 단 한 차례도 피해자 얼굴을 노출하지 않으며 차별성을 보였습니다. 반면 TV조선은 모든 안희정 재판을 다룬 모든 방송에서 피해자 얼굴을 노출했고 채널A의 경우 <정치데스크>는 자제했으나 <뉴스TOP10>은 3차례 노출했습니다.

프로그램명	대담 제목	피해자 화면 노출 여부
MBN <뉴스와이드>	<사과문 발표한 검찰 '논란의 변론'한 변호인? 안희정 첫 재판... 무슨 일이?>(7/3)	X(뒷모습 삽화 활용)
	<겉으로는 '민주적 리더십' "왕 같은 존재, 예스맨만 남아" 안희정, 두 얼굴의 리더십?>(7/10)	X(실루엣 활용)
	<전 비서 측 "안희정은 왕" vs 안희정 측 "유독 친밀" 양측 공방, 진실은?>(7/11)	X
	<'폭로'와 '폭로' 안희정 재판 복마전 양상 양측 공방 쟁점은?>(7/12)	X(실루엣 활용)
	<안희정 아내 법정 첫 진술 '위험할 것 같아 멀리하라' 조언 공방 가열... 재판 영향은?>(7/13)	X(얼굴 삽화 활용)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산부인과 진단서>(7/3)	O
	<"혼인 경험, 고학력">(7/4)	O
	<가림막 등장>(7/6)	O
	<"희망이고 왕이었다">(7/9)	O
	<"애 아빠 살려야지">(7/10)	O(민주원 씨 강조 포함)
	<반격나선 측근들>(7/11)	O
	<셀프 호텔 예약>(7/12)	O(민주원 씨 강조 포함)
	<리조트에서 무슨 일이?>(7/13)	O
채널A <정치데스크>	<"24시간 휴대전화 소지">(7/4)	X
	<안희정의 반격>(7/11)	X
	<안 부인 남편 구원투수 될까>(7/13)	X(민주원 씨는 노출)
채널A <뉴스TOP10>	<7. "학벌 좋은 여성" vs "나르시시즘">(7/3)	O
	<6. "지사님, 저 울어도 되죠?">(7/11)	O
	<3. "김지은이 호텔 직접 예약">(7/12)	X(민주원 씨는 노출)
	<3. "비서 마누라로 불렸다">(7/13)	O

△ 7/3~7/13 '안희정 재판' 관련 보도 중 피해자 영상 활용 여부 비교 ©민주언론시민연합

성폭력 보도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노출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언론을 통해 자신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해도 이를 사용할 때엔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그러나 TV조선과 채널A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찍었던 과거 영상을 긁어모아 반복적으로 보여줬고 심지어 김지은 씨가 JTBC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털어놓던 인터뷰 영상을 배경으로 대담을 나눈 사례도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간음에서의 ‘위력’ 해석

장임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안희정 전지사 성폭력 사건은, 다른 미투운동의 주된 고발 대상이 되었던 성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행위의 수단이 되었던 강제력 행사의 방식이 폭행·협박과 같은 유형력이 아닌 소속된 집단 내부 권력관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무형의 지배력이라는 점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현행 형사법상 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행위수단이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동안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위력간음 사건에서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위력에 대해 협소하게 해석해 온 판례의 태도로 인해, 안희정 사건을 포함한 미투운동을 통해 제기되었던 이른바 ‘권력형’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다. 이에 형법상 업무상 위력간음추행에 대한 해석론적 접근을 통해 위력에 대해 어떠한 판단기준을 정립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 위력의 개념 및 판단기준

형법상 위력은 업무방해 등에서 폭행·협박과 같은 유형력의 행사 이외에 상대방의 자유의사에 반할 수 있는 유무형의 세력을 포괄하는 구성요건이다.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문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대해,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위력의 행사 결과로 인해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 이를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혼란케 할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이 때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범인의 위세, 사람의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하기 족한 정도에 대해서는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 미성년자 및 장애인 대상 위력간음에서의 위력 판단기준

이렇게 위력 자체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세력(유무형의 힘 포함)을 의미하므로, 여기에는 최협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협의에 의한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

5868 판결)이 위력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판례의 기준이다. 그러나 위력간음의 경우 위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강간에서의 최협의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 내지 저항행위를 주요한 요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뇌병변1급 장애인인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욕설과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쪽으로 누르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를 위력으로 인정하면서 공소장 변경없이 위력간음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거나(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 성경험이 없는 17세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하면서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벨트를 잡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그냥 하자며 설득하고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막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은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으며 범행장소가 인적이 드문 외딴 곳에 주차된 차안이기 때문에 항거가 현저히 곤란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위력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또한 성경험이 있는 17세의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아버지인 피고인과 성교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폭행협박이 없었고 피고인과 재차 성관계를 가졌으며 안겨보라는 피고인의 말에 스스로 안긴 점 등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겁을 먹은 나머지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부인하여 위력간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교행위 당시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목을 힘있게 짊 잡았고 울면서 몸을 비트는 피해자의 바지를 힘으로 벗기는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갑자기 껴안고 키스를 하고 팔목을 짊 잡은 피고인의 행위를 예상하지 못하여 순간적으로 피고인에게 압도당하여 정상적인 저항행위가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이렇게 위력간음에서의 위력의 판단에 있어 판례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를 억압하는 신체적인 유형력의 행사, 저항하기 어려운 장소 내지 피해자의 경악과 공포 존재, 술에 취하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 신체적인 차이의 존재 등을 위력의 요건으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위력의 판단기준을 최협의의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유형력으로 인한 저항의사의 제압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와 유형력의 행사가 존재하는 경우 최협의 폭행협박의 입증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위력을 입증했다고 보는 태도는 주로 아동청소년 대상 내지 장애인 대상 위력간음죄의 판례에서 나타난다.

아래 [표1]은 형법, 성폭력특례법, 아동법상 위력간음의 대상과 법정형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위력간음의 체계

조문	대상	법정형
13세미만위계위력간음(성§7⑤)	13세 미만 아동	무기 또는 10년이상
19세미만위계위력간음(아§7⑤)	19세 미만 청소년	무기 또는 5년이상
장애인위력간음(성§6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	5년이상
업무상(피보호감독자)위력간음(§303①)	19세 이상 성인 업무, 고용 등 보호감독·피보호감독 관계	5년이하 1500만 이하
피구금자위력간음(§303②)	구금·피구금 관계	7년이하

미성년자나 장애인 대상 위력간음의 경우 법정형이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대방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케 하는 최협의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죄(3년이상 유기징역)보다 행위의 불법성이 더 높게 규정되어 있다. 판례는 이러한 미성년자나 장애인 대상 위력간음에 대해서는 명시적 거부 의사표시 및 폭행 또는 협박의 행사라는 요소를 위력을 인정하는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법률의 체계적 해석에 따라, 법정형이 5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하고 있는 업무상 위력간음에 대해서 위력의 판단기준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위력간음의 경우보다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 업무상 위력간음에서의 위력 해석

■ 업무상 위력간음 판례

다른 위력간음에 비해 업무상 위력간음이 5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라는 낮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간음은 일반적인 양형상 감경요소(초범, 합의 등)가 있다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기 때문에 판례가 많지 않다. 현재 공개되어 있는 판례로는 아래와 같이 두 건의 판례를 찾을 수 있다.

먼저 업무상 위력간음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연령, 경력, 직업, 환경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두 사람의 신분관계 이외에 범행장소로 이르게 된 경위가 유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력의 이용을 인정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두 사람의 이 사건과 같은 성교관계에 이른 경위가 당연히 되거나 또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시인될 수 있는 사정이 두 사람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시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연령, 경력, 직업 환경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과 두 사람 사이의 신분관계와 아울러서 이 사건 여관에 이르게 된 경위 사정 즉 피고인이 미장원 주인 남자로서 그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저녁을 사준다는 구실로 데리고 나와서 식사 후에 피해자의 숙소로 보내준다고 하면서 상경후 아직 서울지리에 생소함을 이용하여 “빠스”를 같이 타고 다니는 등 고의로 시간을 지연시켜서 야간통행금지에 임박한 시간으로서 부득이 부근 여관에 투숙치 아니할 수 없는 것 같이 하여 위계로 유인 투숙하고 제1심 판시와 같은 위력으로 간음한 점 등으로 미루어서 볼 때에 이 사건의 두사람과 같은 사이의 성교관계가 피해자 스스로의 승낙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경험칙상 어렵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은 “위력을 이용하여”에 대한 판단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유형력 행사 여부나 행위시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석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을 위력의 정도를 충족하는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대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연령 차이, 업무상 관계와 환경, 성교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또는 합의의 존재 여부에 대해 일반인의 관점에서 경험칙상 판단함으로써 위력을 판단하고 있다.

가장 최근 업무상 위력간음이 인정된 1심 판결로는, 요양보호사와 조현병 환자와의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서 신체적 속박을 하겠다고 고지하여 공포심에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

음한 것을 위력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 있다(울산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고단 3828 판결).

■ **업무상 위력간음죄 해석 쟁점:**

행위시 거부 의사 표시 또는 유형력 행사 여부에 대한 판단

형법체계상 업무상 위력간음의 경우에 행위시 저항의사의 제압 또는 유형력 행사라는 요소를 위력의 정도를 충족하는 기준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최근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 최협의설 완화 경향을 고려하여 볼 때에도 판단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강간죄 판례에서는, ① 폭행협박의 최협의설에 대한 규범 판단을 유지하고 있으나, ② 최협의 폭행협박의 정도를 판단할 때에 실제 저항행위의 제압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거부 의사의 제압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판단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선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5.07.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탈출하려고 하거나 소리를 질러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옷이 벗겨진 구체적인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 등이 저항행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한 유형력 행사가 피해자의 저항행위를 불가능하게 한 폭행협박으로 인정하고, 피해자-가해자의 관계가 아는 관계라거나 연인관계라는 사실이 성적인 자기 방어를 포기할 정도의 심리적 억압상태를 부인하는 근거로 고려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 신체적 차이, 당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알코올의 섭취) 등을 고려한다. 다시 말해, 폭행·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제압된 사정 또는 객관적으로 보기에 저항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정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비장애인인 성인의 경우,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는 경우 강간죄, 업무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폭행협박은 아니나 위력을 이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간음이 적용하게 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강간죄 적용에 있어서는 저항의사의 표시와 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통한 저항행위의 역제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가 행위시 실제 반항행위나 탈출의 시도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친밀한 관계가 저항행위의 포기를 초래하는 심리적 상태에 대한 변론이 될 수 없고 그러한 상태는 행위시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 상태나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신체적 격차,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상황과 같은 요건으로 입증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거부 의사의 표시와 이를 억제하는 유형력의 행사, 그리고 행위시 피해자-가해자와 관련된 외적인 조건들을 통해 현저히 항거 곤란한 폭행협박의 정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볼 때, 강간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업무상 위력의 경우에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위력간음의 판례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와 유형력의 행사를 요구하게 되면, 강간죄와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에 큰 차이가 없어서 체계상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에 없다. 그러므로 업무상 위력간음에서 위력을 이용하여에 대한 판단기준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 및 유형력의 행사가 아닌 피해자-가해자의 관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정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업무상 위력간음죄의 위력 해석: 업무 등 보호감독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업무상 위력간음죄에서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위력의 정도에 대해 일반인의 관점에서 경험칙상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현재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위력간음죄 판례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 기준에 대해 학자들은 판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 밝히지 않아 자의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 준수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 하에, 위력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들도 있다.²²⁾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위자가 어떠한 우월적 지위에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위력의 존재를 증명하고 간음행위와 위력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판단기준을 제시하거나²³⁾, 위력의 객관적인 행위형태를 고려하여 위력을 ‘행위자와 피해자간에 존재하는 일정한 관계에 기한 지위의 남용’이라고 재정의하고 구체적인 입증은 남용이라는 측면보다는 피해자를 종속시킬 수 있는 지위의 존재에 중점을 두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²⁴⁾

업무상 위력간음의 판단기준으로 ‘피해자와 행위자 간에 존재하는 피해자를 종속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는 업무상 위력간음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기준이다. 해외에서의 위력간음은 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행위자의 특정한 공적 지위에 한정되어 있으나, 우리의 경우 1953년 형법제정 당시 “업무, 고용 등 기타 관계”라는 사적 지위까지 포괄하는 규정을 둔 업무상 위력간음죄를 신설한 이유는 한국사회 내 위계적 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된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성적 폭력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조선법제편찬위원회는 <형법 기초요강>에서 “간음죄의 장하에 유리한 지위 및 기타 위력 또는 혼인의 위계를 사용하여서 부녀의 정조를 유린하는 조문을 신설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엄상섭은 <형법요강해설>에서 폭행협박 없이 강자의 우월적인 지위로 인한 성적 침해가 존재하며 이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미풍에 비추어 부녀의 정조는 재산권은 물론이고 때로는 생명권보다 소중한 것임에 불구하고 강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약자의 지위에 있는 부녀의

22) 안경옥(2015),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죄의 판단기준 및 형법상 성범죄규정의 개선방안. 경희법학 제 50권 제4호, 205-31쪽; 류부곤(2013), 미성년자 등 간음죄에 있어서 ‘위력’의 의미, 형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참조.

23) 안경옥, 위의글, 225쪽.

24) 류부곤, 위의글, 151쪽.

정조를 농락하는 소행에 대하여는 그[것이] 강간이 아닌 이상 아무런 처벌규칙도 없는 것이 우리 현행 형벌법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키 위함이다. (엄상섭, 형법요강해설, 1948년 9월 30일)

이에 따라 형법초안에 “감독자의 지위이용에 의한 부녀정조유린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으며(형법초안 이유설명서), 이것이 업무상 위력간음죄이다.

업무상 위력간음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에 피해자와 행위자 간에 존재하는 피해자를 종속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위력 판단의 객관적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

피해자와 행위자가 간의 우월적 지위의 존재 여부는 행위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권세에 대한 평가 이외에도 해당 업무 및 고용 등 기타에서의 보호감독 관계가 왜곡되어 일상적인 노동권 및 인격권 침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우월적 지위의 개념은 업무 및 고용 등의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위를 넘어선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정도의 지위와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상 위력의 객관적인 요건으로 인정되는 우월적 지위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업무 등 관계에서 부당하고 부적절한 요구와 이로 인한 근로권 및 인격권 침해가 반복 또는 지속적으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우월적 지위로 인해 피해자를 제압하고 있다는 인식, 다시 말해 행위자의 부당한 요구를 피해자가 감내할 것이라는 행위자의 인식이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발제 5 >

이것이 성폭력이 아니라면 무엇이 성폭력인가?

권김현영(여성주의 연구 활동가)

(* 본 발제문은 오늘 재판부에 제출하는 의견서로 대신합니다.)

사건번호 2018고합75 강제추행 등

피 고 인 안희정

피 해 자 박은희(가명)

의 견 서

본 의견서 제출자는 여성학을 전공한 성폭력 관련 연구자로서, 성폭력 관련 논문 및 단행본을 다수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전 충청도지사가 수행비서에게 4차례의 간음과 수십 차례의 강제추행을 한 것은 명백하고도 전형적인 성폭력이며, 법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본 의견서에 관련 의견을 첨부하오니 귀 재판부에서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권김현영 (인)

현 국방부 성범죄 TF 전문위원

현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현 여성가족부 자문위원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전 한국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전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귀중

1. 序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에 이르기까지 당시 비서로 재직 중이던 박은희씨에게 총 4차례의 성폭행 및 수십차례의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본 의견서에서는 사건의 법적 판단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책임의 문제(미투 운동의 의미 퇴색)와 강간죄의 구성요건에서 폭행과 협박을 전제했을 때 생기는 문제(국제기준미달 및 여성인권침해)를 논하고, ‘위력’이 발생하고 실행되는 성폭력의 특수한 맥락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2. “성폭력은 권력의 문제” - 미투 운동의 의미

지금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하게 교육받고 투표하며 여성에 대한 차별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미투 운동을 통해 드러난 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행해온 성적 착취와 폭력에 대해 우리 사회의 법적 제어장치는 전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현직 검사가 뉴스룸에서 8년 전의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민들에게 직접 변화를 호소해야할 정도였다는 점은 사법부로서는 매우 뼈아프게 성찰해야할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피해자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 중 하나는 법정 의무교육이 이십년 이상 시행되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1999년부터 직장 내 성희롱 의무 교육을 실시했고, 2013년 이후부터는 전국민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으로 확대했습니다. 국가는 지난 수십년간 법정 의무 교육을 통해 국민에게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이며,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간음이 곧 강간이라고 교육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법정 의무교육의 내용에서 배운 것과는 다르게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강간은 동의여부가 아니라 저항의 정도와 수준을 통해 증명되고,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행위는 해당 판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성폭력은 성별권력관계, 즉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며, 그렇기 때문에 여성과 아이에게 특히 집중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간의 성별권력관계라는 조건, 그리고 그 조건을 더욱 강고하게 강화시키는 상하관계라는 차원은 지금까지 법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7월에 발표된 법무부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법무부 . 검찰조직 내에서 성희롱 .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전체의 61.6%입니다. 이중 강제추행 등 형사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해도 22.1%에 달한다는 결과를 나왔습니다²⁵⁾. 가장 정의로워야할 사법부로서는 뼈아픈 조사결과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2018년의 미투 운동이 특히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영역은 학교, 대학, 직장, 군대와 같은 곳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상반기에 이어진 미투 운동은 학교, 대학, 직장, 군대 등에서 선생, 교수, 상사, 선임자가 권력을 이용해 학생, 신입사원, 후임자에게 성적 봉사를 빈번하게 강요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소수의 가해자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해행위를 저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 호소는 묵살되기 일쑤였습니다. 상호합의 했다고 변명하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가해자의 믿음에 종종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성범죄로 고소된 이들을 위한 법률 컨설팅이 성업하는 현상 역시 사법부가 성폭력을 권력관계의 문제로 보지 않아 위력의 해석을 최소화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각지에서 미투가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도 국회에서 유독 잠잠했습니다.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²⁶⁾에 참여한 여성보좌관²⁷⁾은 제게 국회가 잠잠한 이유는 여기에 진짜 권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미투 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성폭력은 무엇보다도 권력의 문제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해당 집단의 구성원 전체에게 심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의 자유를 통제해왔습니다. 피해자들의 자기방어권이 심각하게 제한되었던 상황입니다. 직업 선택과 진로, 승진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자신이 감독하고 있는 대상에게 성적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주어져있는 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직접 여론을 상대로 자신의 피해를 호소해야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20여년간 피해자를 상담하고 사건을 지원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성폭력 문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이토록 가혹하게 하는 사회에서 어떤 피해자에게도 감히 앞에 나서라고, 끝까지 싸워야한다고 함부로 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를 돕고자 했던 변호사, 검사, 판사 등 우리 사회 사법부의 구성원들과 연구자들과 활동가들 역시 결국 피해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만 변화를 위한 행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 박은희씨의 용기가 부디 헛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피고인 안희정의 성적 행동은 고소인 박은희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감행되었고, 두 사람 사이의 권력 차이는 고소인 박은희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분명했다는 점을 다시

25) 김은지 기자, '법무부 대책위'가 설문조사했더니, 시사인, 2018년 7월 24일.

26) 국회의원 및 보좌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958건), 피해자 대다수는 여성이었으며 이중에서 인턴 혹은 9급일 때가 76.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유승희 의원실, <국회내 성폭력 실태조사>, 2018.5.2

27) 김○○ 보좌관(34세, 국회경력 6년, 여)과의 인터뷰 (2018/5/25)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3. 성폭력 개념 변화의 필요성 - 거부여부에서 동의여부로

강간에 관한 죄를 규정하는 개념은 지난 30년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1995년 이전까지 강간은 형법 제 32장에서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되었습니다. 개정 당시 여성학자들과 법학자들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규정하던 ‘정조’ 대신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문구로 대체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라는 행위만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법에서는 ‘강간’에 대한 법적 정의가 아직도 확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반복된 경고 - 강간최협의설 폐지 권고

한국의 형법 제 297조에서는 성인간의 간음이 강간으로 판단되기 위한 구성요건을 최협의(最狹義)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하 최협의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성관계 중에서 “폭행 혹은 협박”을 동원하여 의사를 제압한 경우만을 강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협의설에 입각한 판결은 결국 피해자에게 신체적 훼손을 감수하고 정조를 지키라(“죽을 힘을 다해 저항하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최협의설이 아니었다면 본 사건은 위력에 의한 간음죄와 강제추행이 아니라 강간으로 기소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강간에 관한 법적 개념 규정은 대체로 정조에 관한 죄(A Crime Against Chastity)가 아니라 신체와 생명에 관한 죄(A Crime Against Persons)로 인지합니다. 강간은 합의 없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적 접촉²⁸⁾이며, 그 결과 신체적 통합성(Bodily Integrity)를 침해하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서는 2010년 7차 회의, 2018년 8차 회의에 걸쳐 강간최협의설을 폐기하고 형법 제 297조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의 부족을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²⁹⁾.

강간죄 구성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는 최협의설은 강간위기상황에 놓여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조를 우선시하라”는 부당한 사회적 압력을 법적으로 승인합니다. 최협의설의 존속은 정조에 관한 죄가 명시적으로 사라졌으나 묵시적으로는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협의설의 문제는 한국에

28) Mary Pellauer, Barbara Chester, and Jane Boyajian, eds., *Sexual Assault and Abuse*, New York:Harper and Row, 1987. pp.17

29)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576, 1577 회의 결과 23(a)항, 2018-2-22

처음 성폭력 관련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강간의 정의와 보호법익에 대한 법적 개념이 부재한 상태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기대온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 하급심에서 최협의설을 점차 완화하여 적용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 것은 최협의설을 둘러싼 문제의식이 사법부 내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강간구성요건의 변화 추세

‘명시적 동의여부’의 결여 중심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 여부를 통해 강제성을 규정했던 기존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명시적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점차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강간죄 구성요건은 폭행 및 협박이 아니라 동의를 결여(Lack of Consent)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자유의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스페인, 스코틀랜드, 벨기에, 스웨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는 강간관련법을 개정하여, “명시적 동의 여부”의 결여가 바로 강간이라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³⁰⁾. 일각에서는 비동의간음죄의 도입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국가개입의 우려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보다 성의 자율권에 대한 문화적 수용도가 높은 북미와 유럽 등지에서 강간관련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강제적인 성을 확실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의 법학자들 역시 이에 대해 “동의를 성”에 대해서는 사회성원의 자율에 맡겨야 하겠으나, “강제적 성에 대해서는 국가개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³¹⁾. 조국 교수 등은 남성중심적인 법해석의 전형인 최협의의 폭행·협박론에서 비동의간음죄를 입법하는 것은 강간 개념의 남성중심성을 타파하는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³²⁾.

심지어 성폭력 범죄 개념의 외연이 지나치게 확대하지 말고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에만 국한할 것을 주장하는 학자조차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성폭속범죄가 아니라 형사처벌이 동반된 성폭력범죄로 엄격하게 규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³³⁾.

강제성에 대한 해석

국제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성폭력을 폭력 혹은 강요(violence or coercion)에 의한 성행위 혹은 그런 행위의 시도, 원치 않는 성적 논평 또는 성적 접근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³⁴⁾. WHO가 정의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30) Victor Tadros, Rape Without Consent,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ume 26, Issue 3, 1 October 2006, Pages 515?543

31) 한인섭, “성폭력의 법적 문제와 대책”, 인간개발연구 제3권 제1호, 1996, p. 201

32) 조국,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성폭력 범죄, 2002,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2호, pp.165~186

33) 정신교, 각국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비교·관찰을 통한 우리 경찰의 수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치안정책연구소, 2013, 6~8쪽

정의 중 특히 귀 재판부에서 주목할 지점은 강압(Coercion)의 정의입니다. 강압은 모든 범위의 힘을 포괄하며, 신체적인 힘, 심리적인 협박,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직업을 구하지 못할 위험 등이 포함됩니다. 술이나 약에 취해 동의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도 강간에 준하는 상황입니다³⁵⁾.

성적 강압(Sexual coercion)은 압력(pressure)이나 속임수 혹은 비육체적인 방법으로 강요된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³⁶⁾. 성적 강압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강간이라는 법적 정의가 규정하던 것보다는 넓은 범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성을 매개로 사적 영역에서 벌어지므로 알려지기 어려웠습니다. 많은 여성학자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 자체가 오랫동안 비가시화되었고, 그 폭력을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방치해온 결과, 신체적 폭행 혹은 협박 없이도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물적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³⁷⁾.

성차별적인 사회에서의 성폭력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남성중심적인 성문화가 일상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문화일수록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은 성폭력과 성관계를 구별하기 어려워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반면 여성들이 종종 남성이 여성을 주목하거나 관심을 표현하는 행동(attention)을 ‘침해’로 경험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행동이 불쾌하고 폭력적이었던 이유로 친밀함에 대한 일방적인, 근거없는 가정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상대도 좋아할 줄 알았다”,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여자들은 좋아했다”, “너도 사실 알고보면 즐긴 거 아니냐” 등등 가해자가 자주 말하는 변명 속에는 바로 이렇게 상대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정의내리는 태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남성들의 일방적인 성적 침해를 구애행위로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문화에서 많은 여성들은 싫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동의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박은희씨가 수회의 간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저항보다는 명시적 동의를사를 표명하지 않는 정도로 거부의를 전달한 이유에 대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동이가 부재하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관계에 대한 정의를 전제하는 이같은 섹스를 강요된 섹스였다고 설명하며 이는 ‘강간’과 같다고 언급합니다. 리즈 켈리는 응답자 여성 중 63%가 이같은 강압적인 섹스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이들 중 66%는 그러한 경험이 한 번 이상이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러 차례 경험들은 지속적인 관계 내에서 발생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³⁸⁾

34)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Chapter 6, pp. 149.

35) WHO (2002), 'Sexual violence', in World Report in violence and health, Chapter 6, pp. 147-181

36) <https://www.womenshealth.gov/relationships-and-safety/other-types/sexual-coercion>

37) Peggy Reeves Sanday,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Rape: A Cross-Cultural Study, Journal of Social Issues Volume:37 Issue:4 Dated:(Fall 1981) pp. 5-27

38) Liz Kelly, "4. 'It's happened to so many women' : sexual violence as a continuum (1)", Surviving Sexual Viol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8, pp.74-96 / Pauline B. Bart, "Stopping Rape: Effective Avoidance Strategies," with Patricia O'Brien., Signs

4. 위력에 의한 피감독자 간음죄 성립여부

본 사건의 경우 폭행 협박은 없었으나 명시적인 동의여부가 표명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비동의간음죄가 없고 형법 297조가 폭행 및 협박을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본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 협박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³⁹⁾.

안희정 전지사가 고소인 박은희씨와 비교했을 때 지위가 높고 권세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감독자가 피감독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성적 접촉 혹은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피감독 간음은 가장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입니다. 성인간의 성적 교류에 대한 문화적 금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미국 등에서조차 고질적인 권력형 성폭력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교수-학생 연애금지조항(하버드대학⁴⁰⁾)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직원끼리의 연애를 금지하는 조항을 가진 회사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군대 내에서 상하 2단계 이내 지휘관계에 있는 자, 교관과 피교육생의 관계에 있는 자, 기타 직권 직무 등과

Autumn 1984, 10, (1), pp. 83-101

39) (대법원 1998.1.23., 선고,97도2506, 판결) “성폭력법률상의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키스, 포옹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유치원 원장으로서 그 원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유치원 교사들이거나 채용 예정된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려는 의사로, 업무차 피고인의 집 앞에 온 피해자를 오른팔을 잡아당겨 안으려고 하고(판시 제1 행위), 피해자를 자기의 차량에 태우고 가다가 은밀한 장소에 이르러 강제로 키스를 하든가(판시 제2 행위), 유치원 내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 올리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하고(판시 제3 행위), 두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이에 놀라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쥐고 주무르고(판시 제4 행위), 전화기 전달을 빙자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 밑 부분을 닿게 하는 행위(판시 제5 행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한 것으로 20대 초, 중반에 이른 젊은 미혼의 유치원 교사들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또한 그 행위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있는 여러 피해자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일반인의 입장에서조차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40) 하버드대, 교수-학생 연애·성관계 금지 학칙, 연합뉴스 2015년 2월 6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06/0200000000AKR20150206084200009.HTML>

관련해 특혜 및 비리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제를 금지하는 조항⁴¹⁾이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연애금지조항은 사실상 이 문제를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서 개인간 에티켓을 권장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보다 진일보한 변화는 2018년 공공기관의 장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는 (...) 다른 구성원에 비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더 높은 책임이 요구된다”를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⁴²⁾

안희정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이거나 임원 수준이 아니라 도 내에서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상식적으로 높은 책임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당사자 박은희씨는 해당 업무를 시작하고 1년 이내에 수차례에 걸친 피해를 입었으며, 그 반복된 상황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직장을 그만두는 것 외에 없었을 것입니다. 박은희씨는 유력 정치인의 정무비서로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반 상식을 비추어 봤을 때 직업적 헌신에 대한 유무형의 보람과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매우 드문 상황에서 박은희씨가 즉각적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은 점은 충분히 이해할만한 일입니다.

오히려 도지사라는 매우 위중한 자리에서 비서에게 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진술에서 밝혀진 바 두 사람 사이를 데이트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증거도 완전히 부재한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피고소인은 자신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비서로서 성적 봉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인지 아니면 비서는 자신의 말을 거절할 수 없거나 좋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인지 등등을 질문하며 초점을 다시 안희정 전지사의 행동이 어떤 논리적 정합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 4차례 모두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규율할 수 없다고 해도, 수행비서로 일한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스위스 출장 중 당하게 된 최초 사건의 경우만을 한정해서 단순일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당시 상황은 단순히 지사와 수행비서간의 권력관계를 넘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기에는 매우 낮은 환경이었다는 점을 현저하게 저항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5. 결

이상의 논의를 통해 귀 재판부에 말씀드리고자 한 바를 요약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폭행과 협박을 범죄구성요건으로본는 강간죄

41) 국방부의 ‘불온 연애’ 금지 공문 전문 - “상하 2단계 이내 지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교제 불가”, 신동아 2008년 12월 5일

42) 여성가족부, 2018년 공공기관의 장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2018.6

의설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여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익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최협의설의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여성특별위원회가 해당 법규정을 개정할 것을 공식적으로 재차 권유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이슈입니다. 피해자의 부동의를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보아야 하며, 부동의여부에 대해 판단할 때의 핵심은 당사자 간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피해자가 처해있는 위치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안희정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 우리 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사법적 정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성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며 우리 사회는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하던 사회에서 성폭력은 정조의 문제이지만 여성과 남성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인정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사회에서 성폭력은 성적 자율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판에서 성폭력은 정조를 지키지 못한 피해 여성의 불행으로 취급되고, 피해자의 혼인여부와 사생활이 성폭력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마저 이런 판결이 반복된다면 한국 사회의 사법정의에 대한 여성들의 불신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감독자를 간음하여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피고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행위를 부디 법으로 엄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07. 27.

권김현영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귀중

[긴급 토론회] :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2차 피해
- 안희정 전 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 발 행 일 | 2018. 07. 26.
 - 발 행 처 |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 사무전화 : T. 02-338-2890)
 - 주 관 |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언론시민연합
 - 주 최 |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 편 집 | 남성아
 - 인 쇄 | 카피플러스(T. 02-322-1049)
-